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23. 12. 21.(목), 14:00 ~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안　　건 : 총 14건

- 심의 10건(밀양 영남루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등)
- 검토 2건(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등)
- 보고 2건(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등)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밀양 영남루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공개
2	삼척 죽서루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공개
3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복원 위치 선정	공개
4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2차)	공개
5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도시형생활주택 및 일반숙박시설 신축(5차)	공개
6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주변 천관전 건립(2차)	공개
7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노유자시설 건립(변경허가)	공개
8	밀양향교 대성전, 명륜당 주변 허용기준 제정(안)	공개
9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상현묘 주변 허용기준 제정(안)(2차)	공개
10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등 61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공개
【검토사항】		
11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2	나주 서성문 안 석등 지정명칭 변경 검토	공개
【보고사항】		
13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종교시설(사명대사 교육관 및 체험관) 건립 소위원회 결과보고	공개
1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21건)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토사유출방지 사면보수 - 제주향교 대성전 주변 조명시설 정비(태양광) -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1종) 신축(변경허가) - 안성향교 대성전 주변 소매점 및 도로부지 조성 -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공개

학원) 부지 조성 및 건물신축
-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팔공산 소원길 생태탐방로 조성(변경허가)
- 부산 운수사 대웅전 주변 임도구조개량사업
-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주변 천은사 진입 교량 정비
- 충주 고구려비 주변 일반산업단지 조성
-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주변 백화산 등산로(청조루~태을암) 정비
-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백운동 야영장 리모델링 정비
- 창녕 석빙고 주변 전주 신설
- 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주변 이동통신공용기지국 및 전송로 설치
- 영광 불갑사 대웅전 주변 불갑사 진입로 경관조명 설치
-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변경허가)
- 충주 고구려비 주변 농업용수 관로 공사
- 부산 운수사 대웅전 주변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
-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주변 요사채 철거 및 승방 복원
- 여수 진남관 탁본
-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임시 가설컨테이너(농막) 설치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임시 가설컨테이너(농막) 설치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3-12-001

1. 밀양 영남루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가. 제안사항

경남 밀양시 소재 「밀양 영남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남 밀양시 소재 「밀양 영남루」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0차 회의(2023.10.19.)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3.11.02~'12.01)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남도지사

(2)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밀양 영남루」

○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등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 명　　칭 : 밀양 영남루(密陽 嶺南樓)

○ 소유자(관리자) : 국유(밀양시)

○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　　량 : 1동(대루, 능파각, 침류각, 여수각)

○ 지정면적 : 693.60㎡

○ 구조/형식/형태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라.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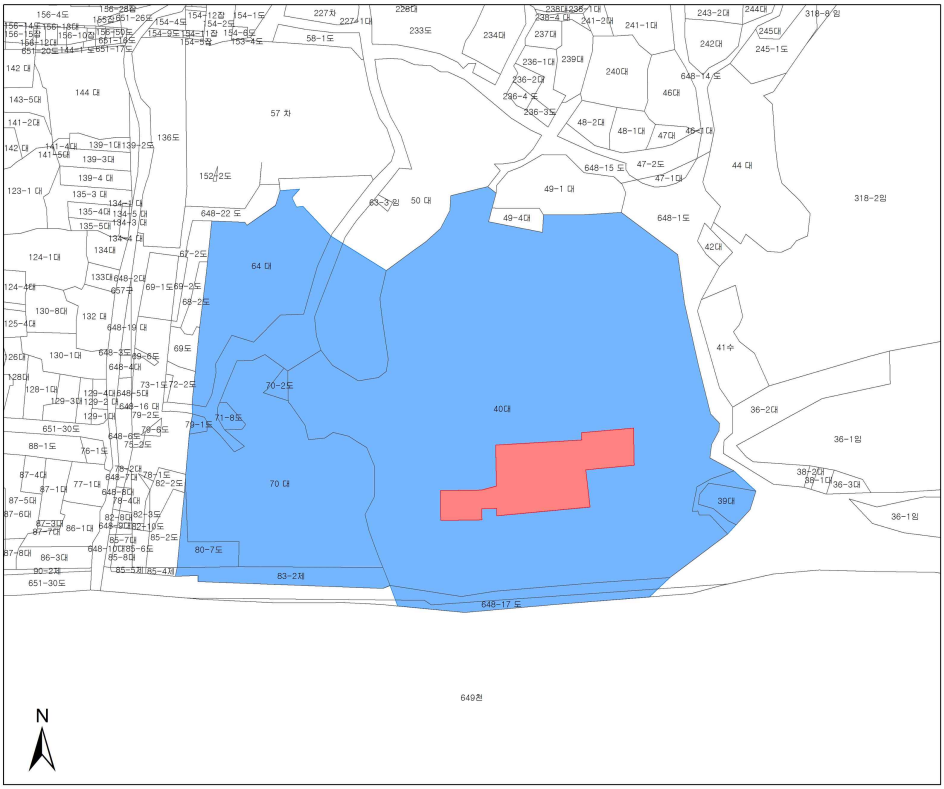

국보

밀양 영남루

密陽 嶺南樓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외

범 례

문화재

보호구역

연속지적

축 척	1:8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총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안건번호 건축 2023-12-002

2. 삼척 죽서루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가. 제안사항

강원 삼척시 소재 「삼척 죽서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 삼척시 소재 「삼척 죽서루」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0차 회의(2023.10.19.)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3.11.02～'12.01)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강원도지사

(2)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삼척 죽서루」

○ 소 재 지 : 강원 삼척시 성내동 9-3번지 등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 명　　칭 : 삼척 죽서루(三陟 竹西樓)

○ 소유자(관리자) : 국유(삼척시)

○ 소 재 지 : 강원 삼척시 성내동 9-3번지 등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　　량 : 1동

○ 지정면적 : 247.1㎡

○ 구조/형식/형태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라. 지형도면

국보

삼척 죽서루

三陟 竹西樓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성내동 9-3번지 외

범 례

문화재

연속지적

축 척 1: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안건번호 건축 2023-12-003

3.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복원 위치 선정

가. 제안사항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보존처리 완료한 국보「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복원 위치 선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9년 문화재 위원회를 통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원주로 환수가 결정되고, 그 동안의 용역 결과를 통해 탑과 탑비의 상태, 보존 환경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지광국사탑 부재 33개 중 31개는 현재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 보존 관리 중임.

○ 금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광국사탑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위치를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 소 재 지

-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594번지(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내)

○ 지 정 일 : 1962. 12. 20.

(3) 추진경과

○ ‘15.~‘16. : 보존처리 가결(문화재위원회), 석탑 해체 및 모르타르 제거

○ ‘17.~‘18. : 복원석재 산지조사 및 도상복원 연구, 결실부재 신석복원

○ ‘19.~‘20. : 결실부재 신석복원, 파손부재 접합 및 강화처리, 보존처리 완료

○ ‘21.~‘22. : 복원 기초자료 구축(디지털 복원과 3D 샌드 프린팅 출력 후 가조립, 부재 박리현상 연구 등)

○ ‘23.(현재) : 지광국사탑 부재의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 임시보관 및 전시

(4) 추진경과

○ 원형부재+신석재 간 접합 : 옥개석 등 19개이며, 총 77개편을 접합・복원

○ 원형부재 간 접합 : 앙화 등 14개이며, 총 43개편을 접합・복원

○ 옥개석은 원형부재 18개편, 신석재 24개편을 접합・복원하였으며, 접합된 면적이 부재 표면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함

○ 폭탄 피해에 따른 다수의 크고 작은 균열과 원형부재와 신석재 간 물성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접합면 고장 장애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과거 시멘트 모르타르에서 기원된 수용성 염은 부분적인 제거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풍화작용으로 손상을 가중시키고 있음

라. 검토내용

(1) 석탑 복원 위치 선정

○ 1안)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부재 임시보관처, 법천사지 내 위치)

○ 2안) 원주 법천사지 승탑원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호각 설치 타당성 용역 결과(원주시 발주)

- 승탑원에 복원 시 석축 및 지반 보강이 필요하며, 연약층이 확인되기 때문에 석탑 복원 후 부분 침하가 발생할 수 있음
- 보호각의 지지력 확보를 위해서는 2~3.9m를 굴토하여 풍화 암반층에 설치하여야 하나 이때 탑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승탑원의 지형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보호각 설치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마. 향후계획

○ (‘24.01.)복원 설계 발주 / (‘24.03.)면진대 설치(원주시) / (‘24.05.)복원공사 발주 / (‘24.09.)석탑 복원

□ 참고 1> 문화재위원회 주요 추진경과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19.06.20.) : 원안가결

○ 지광국사탑은 원주 법천사지로 이전키로 함.

○ 다만, 원위치(승탑원지) 복원과 법천사지 내 전시관에 보존·전시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된 후 재심의토록 함.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보고결과(2021.02.18.) : 원안접수

○ 지광국사탑 및 탑비 함께 '원위치(승탑지) 보존'

○ 원위치 복원을 위해서는 우수 차단 및 습기 제어 필요,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 추진 필요.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21.10.21.) : 조건부가결

○ 지광국사탑비의 경우 원 위치에서 수리하되, 해체 범위와 방안 등의 계획은 건축분과, 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여 세부사항 검토.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보고결과(2023.06.15.) : 원안접수

○ 지광국사탑 부재(31개, 옥개석과 탑신석 제외)의 임시 보관처로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을 지정하며, 해당 부재를 안전하게 이송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 2023-12-004

4.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2차)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보물「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검토”에 해당됨.

※ ‘23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10.19.) : 부결

- 문화유산 보호방안 마련 필요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가흥동)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동 1482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5m, 문화유산에서 30m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고가도로) 신설

1) 도로길이 : L=1.06km

2) 도로폭 : 20m, 4차로

3) 주요구조물 : 291m 교량 1개소

4) 수목식재 : 상록교목(소나무 등 3종), 낙엽교목(느티나무 등 4종) 23주

5) 사업예산 : 600억원

6) 사업기간 : ‘24. 9. ~ ‘26. 8.

안건번호 건축 2023-12-005

5.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도시형생활주택 및 일반숙박시설 신축(5차)

가. 제안사항

경북 상주시 소재 보물「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일반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일반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및 공통사항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에 해당됨.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5.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층수 높아 위압적임)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9.17.) : 보류

- 현지조사, 허가사례 검토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10.15.)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1.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3.18.)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 소 재 지 : 경북 상주시 서성동 163-48번지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상주시 서성동 121-1번지 외 5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20m

○ 사업내용 : 도시형생활주택 및 일반숙박시설 신축(상세내용 **붙임**참조)

※ 경관심의 전(접수 시)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749㎡
- 건축(연)면적 : 1,260.51㎡(26,519.21㎡)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층수 : 지하2층, 지상35층
- 높이 : 110.4m

=> '20년 1월 2차 자체회의 결과 보류 : 자료보완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 경관 심의 결과 및 자료 제출
- 신청사업과 문화재와의 관계자료(주변 현황 등) 제출

※ 경상북도 경관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 주차타워 설치에 따른 주변과의 부조화 및 입주민의 조망권 저해 보완
- 상가외부 전면유리 설치에 따른 간판설치계획 보완
- 건축물 외부 색채계획 재검토(그라데이션 등)

▣ (참고) 보물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도시형생활주택 및 일반숙박시설 신축

구분	2020년 제5차 (2020. 5. 21. 부결)	2020년 제10차 (2020. 10. 15. 부결)	2021년 제1차 (2021. 1. 21. 부결)	2021년 제3차 (2021. 3. 18. 부결)	금회 신청안 (2023. 12. 21.)
대지면적	2,508㎡	2,508㎡	2,508㎡	2,508㎡	**2,459㎡**
건축면적	1,520.9㎡	1,520.9㎡	1,950.0㎡	1,520.9㎡	**1,702.0㎡**
연면적	22,721.8㎡	22,049.6㎡	26,082.0㎡	21,712.9㎡	**15,327.8㎡**
세대수	138세대	132세대	153세대	123세대	**153세대**
층수	지하 2층, 지상 27층	지하 2층, 지상 26층	지하 4층, 지상 24층	지하 3층, 지상 23층	**395세대 (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 /일반숙박시설 96실)**
최고높이	91.8m	81.2m	74.4m	71.9m	**49.2m**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안건번호 건축 2023-12-006

6.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주변 천관전 건립(2차)

가. 제안사항

전남 장흥군 소재 보물「장흥 천관사 삼층석탑」주변에 천관전 건립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천관전을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개별검토”에 해당됨.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09.21) : 부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 소 재 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739번지

○ 지 정 일 : 1984. 11. 30.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740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24m

○ 사업내용 : 천관전 건립

- 사 업 비 : 800백만원(지방비)
- 건축면적 : 54.02㎡
- 건축규모 : 지상 1층, 정면 3칸, 측면 2칸

- 건축양식 : 사모지붕, 겹처마, 다포식
- 최고높이 : 9.3m

※ 지난 신청 대비 금회 신청 현황

분류	'23.9.21. 심의 / 부결	금회
이격거리	문화재에서 21m	문화재에서 **24m**
	대웅전에서 16m	대웅전에서 **19m**
건축면적	54.02㎡	(좌동)
건축규모	지상 1층, 평면 3×3칸	(좌동)
건축양식	사모지붕, 겹처마, 다포식, 중층목탑형	(좌동)
최고높이	10.8m	**9.3m**

안건번호 건축 2023-12-007

7.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노유자시설 건립(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 용인시 소재 보물「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주변에 노유자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노유자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11m, 경사지붕 최고높이 15m 이하”에 해당됨.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10.18)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11.15)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12.20) : 부결

- 절토량 과다 및 토목도면 보완 필요/ 역사문화경관 저해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0.19.)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1.21.) : 원안가결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2.11.) : 원안가결

※ ‘20년 자체검토회의(2020.11.10.) : 원안가결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10번지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746-1 외 2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00m

○ 사업내용 : 노유자시설 건립

구분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최고높이	건축구조	비고
1차 ('18.10.18./부결)	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 신축	1,823㎡	364.13㎡ (2,836.59㎡)	지하1층, 지상4층 / 20.86m(평지붕)	철근콘크 리트구조	
2차 ('18.11.15./부결)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지하1층, 지상4층 / 14.91m(평지붕)	(변동없음)	
3차 ('18.12.20./부결)	(변동없음)	(변동없음)	76.63㎡ (1,688.88㎡)	지하1층, 지상3층 / 10.99m(평지붕)	(변동없음)	*현지조사
4차 ('19.10.19./보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2,795㎡	520.59㎡ (1,633.49㎡)	지하1층, 지상2층 / 10.2m(평지붕)	(변동없음)	*현지조사
5차 ('19.11.21./원안가결)	(변동없음)	(변동없음)	518.93㎡ (1,298.87㎡)	지하1층, 지상2층 / 10.65m(평지붕)	(변동없음)	
6차 ('20.2.20./원안가결)	(변동없음)	(변동없음)	518.20㎡ (1,266.84㎡)	지하1층, 지상2층 / 10.43m(평지붕)	(변동없음)	
7차 ('20.12.17./원안가결)	근린생활시설 신축	1,823㎡	362.97㎡ (1,392.23㎡)	지하1층, 지상2층 / 10.12m(평지붕)	(변동없음)	자체처리
금차	노유자시설 신축	1,822㎡	362.65㎡ (1,991.72㎡)	지하1층, 지상4층 / 14.81m(경사지붕)	(변동없음)	

※ 현상변경 허가(7차, '20.12.17) 대비 최고높이가 4.69m 증가, 연면적은 599.49㎡ 증가하여 재심의 요청하는 사항임.

안건번호 건축 2023-12-008

8. 밀양향교 대성전, 명륜당 주변 허용기준 제정

가. 제안사항

경남 밀양시 소재 보물 「밀양향교 대성전」, 「밀양향교 명륜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밀양향교 대성전」, 「밀양향교 명륜당」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기간(2023.05.01.~2023.05.22.(22일))동안 별도 의견이 없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남도 밀양시장

(2) 대상문화재 : 「밀양향교 대성전」, 「밀양향교 명륜당」

○ 소 재 지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향교3길 19(교동)

○ 지 정 일 : 2020. 12. 29.

(3) 신청내용 : 밀양향교 대성전」, 「밀양향교 명륜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붙임 참조)

(4) 주요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제정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1부.

▣ 보물 “밀양향교 대성전”, “밀양향교 명륜당”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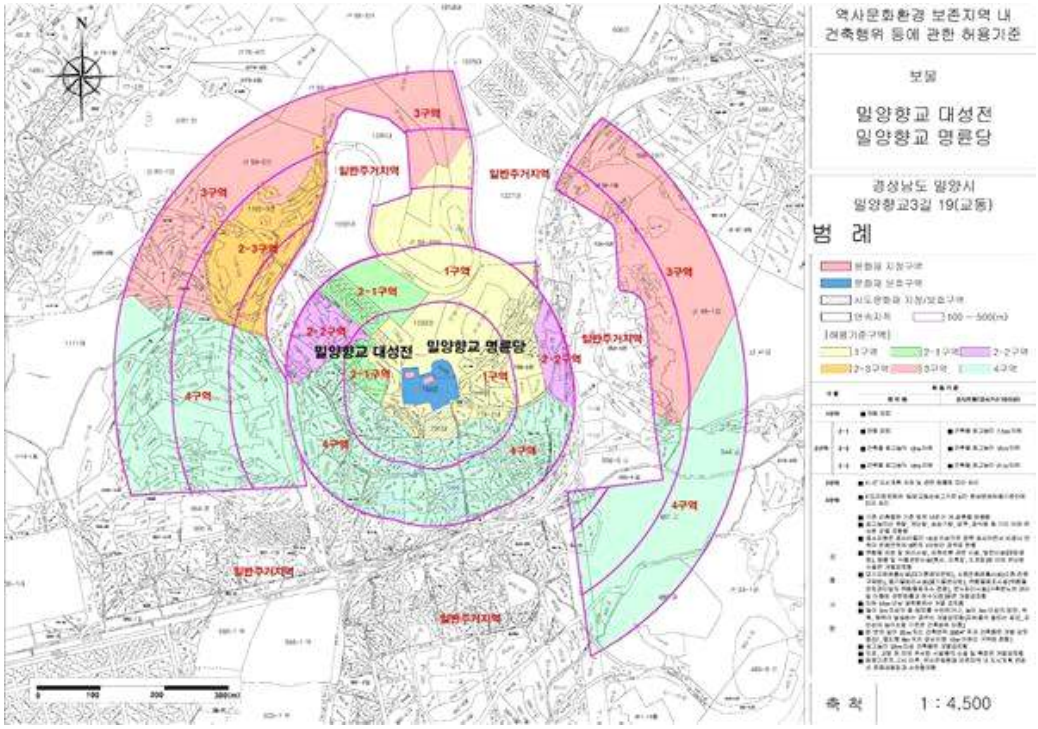

【 도면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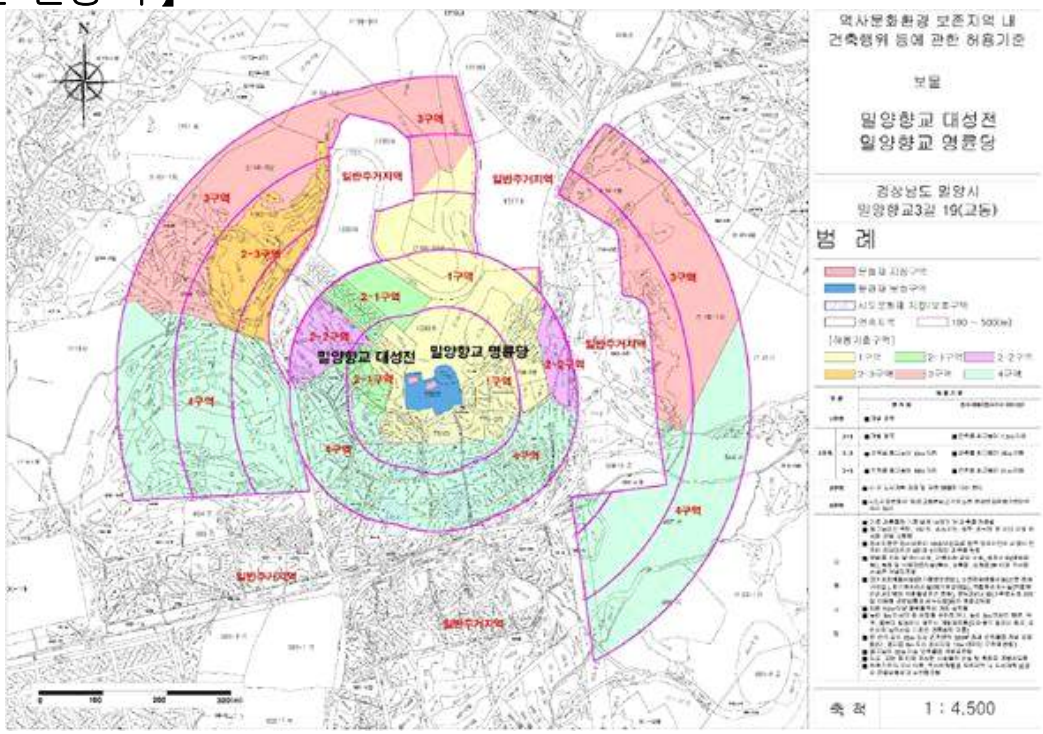

【 허용기준 변경 전 】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허용기준</th></tr>
<tr><th>평지붕</th><th>경사지붕(물매 3:10이상)</th></tr>
<tr><td>1구역</td><td colspan="2">○ 개별검토</td></tr>
<tr><td>2구역</td><td rowspan="3">○ 각 시군별로 대표되는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렴하여 경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td><td>○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td></tr>
<tr><td>3구역</td><td>○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td></tr>
<tr><td>4구역</td><td>○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td></tr>
<tr><td>5구역</td><td colspan="2">○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td></tr>
<tr><td>공
통
사
항</td><td colspan="2">○ 1구역 및 2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또는 시설물) 중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하는 것은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 건물 및 시설물의 건축(설치)시 동 허용기준의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당해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구역의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 구역의 기준을 적용함.(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기준 적용)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 건축물(시설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함.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을 제한하며, 재료의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것을 권장함.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와 10층 이상의 건물은 개별심의.</td></tr>
</table>

【 허용기준 변경 후 】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허용기준</th></tr>
<tr><th>평지붕</th><th>경사지붕(물매 3:10이상)</th></tr>
<tr><td colspan="2">1구역</td><td colspan="2">○ 개별검토</td></tr>
<tr><td rowspan="3">2구역</td><td>2-1</td><td>○ 개별검토</td><td>○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td></tr>
<tr><td>2-2</td><td>○ 건축물 최고높이12m 이하</td><td>○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td></tr>
<tr><td>2-3</td><td>○ 건축물 최고높이18m 이하</td><td>○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td></tr>
<tr><td colspan="2">3구역</td><td colspa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td></tr>
<tr><td colspan="2">4구역</td><td colspan="2">○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밀양손씨고가 외 5건)의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td></tr>
<tr><td colspan="2">공통사항</td><td colspan="2">○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td></tr>
</table>

안건번호 건축 2023-12-009

9.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상현묘 주변 허용기준 제정(안)(2차)

가. 제안사항

경북 구미시 소재 보물「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및 보물「구미 금오서원 상현묘」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및 보물「구미 금오서원 상현묘」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기간(2023. 10. 5. ~ 2023. 10. 25.(20일))동안 별도 의견이 없었음.

※ 2023년 제7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 7. 20.) : 보류

- 282전, 281대 지번의 고도높이에 대한 재검토후 재심의

※ 2023년 제8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 8. 17.) : 부결

- 282전, 281대 부지에 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구미시장

(2) 대상문화재 :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구미 금오서원 상현묘

○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유학길 593-31 (선산읍, 금오서원)

○ 지 정 일 : 2020. 12. 28.

(3) 신청내용 :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구미 금오서원 상현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붙임 참조)

(4) 주요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제정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 1부.

▣ 보물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구미 금오서원 상현묘”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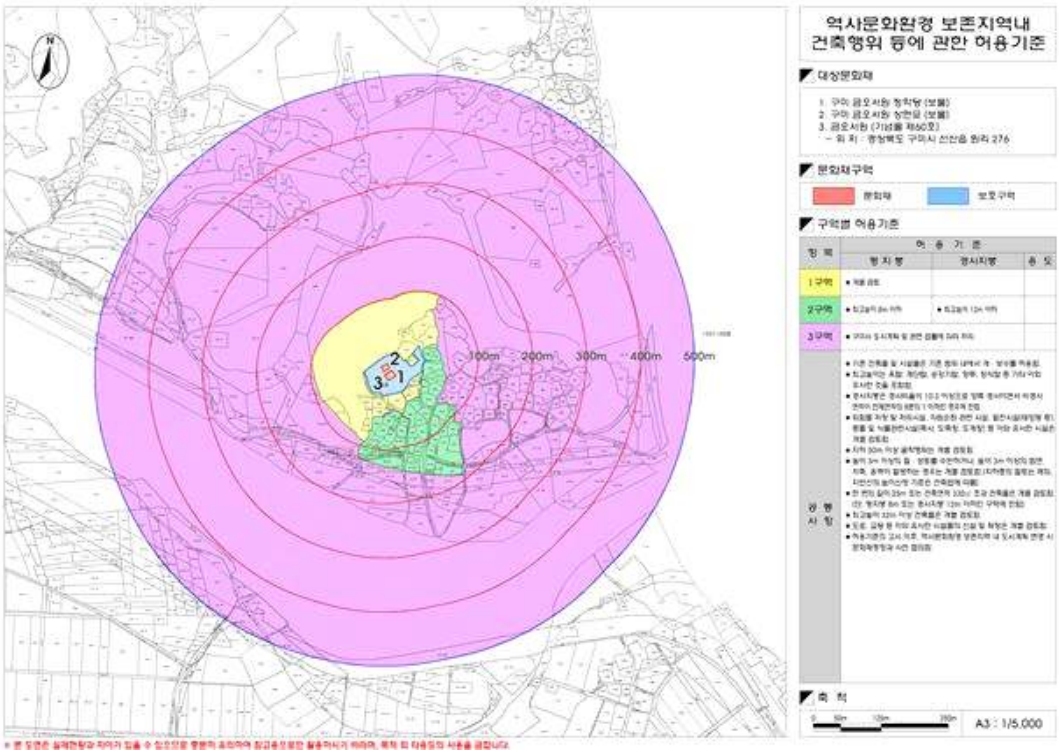

【 지형도면(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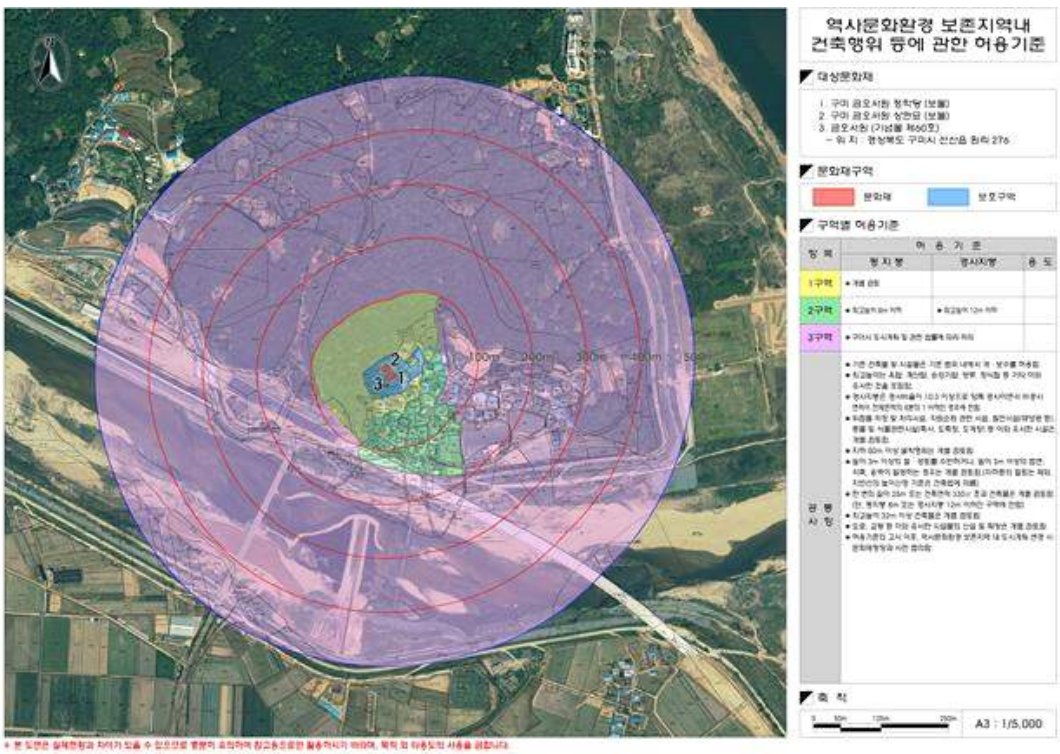

【 범례 표 】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 구미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안건번호 건축 2023-12-010

10.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등 61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서울 은평구 소재 보물「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등 61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은평구 소재「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등 61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신규 및 조정(안)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 중 규제항목이 추가되는 문화유산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기간(20일) 동안 별도 의견이 없었음.

- 부산 금정(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등 3건) : '23. 11. 22. ~ '23. 12. 11.(20일)
- 부산 사상(부산 운수사 대웅전) : '23. 11. 29. ~ '23. 12. 18.(20일)
- 대구 동구(대구 동화사 당간지주 등 12건) : '23. 10. 19. ~ '23. 11. 7.(20일)
- 광주 동구(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 '23. 12. 1. ~ '23. 12. 20.(20일)
- 울산 울주(울주 석남사 승탑 등 3건) : '23. 10. 12. ~ '23. 11. 1.(20일)
- 경기 안성(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등 4건) : '23. 11. 16. ~ '23. 12. 6.(21일)
- 경기 양평(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 '23. 11. 29. ~ '23. 12. 19.(21일)
- 경기 용인(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 '23. 11. 15. ~ '23. 12. 5.(21일)
- 경기 이천(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 '23. 11. 15. ~ '23. 12. 4.(20일)
- 경기 평택(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 '23. 11. 21. ~ '23. 12. 10.(20일)
- 강원 강릉(강릉향교 대성전 등 9건) : '23. 10. 5. ~ '23. 10. 25.(21일)
- 강원 고성(고성 육송정 홍교) : '23. 10. 4. ~ '23. 10. 24.(21일)

・강원 양양(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등 6건) : ‘23. 11. 6. ~ ’23. 11. 26.(21일) ・강원 영월(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 ‘23. 9. 21. ~ ’23. 10. 11.(21일) ・강원 철원(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 ‘23. 9. 13. ~ ’23. 10. 3.(21일) ・강원 춘천(춘천 칠층석탑) : ‘23. 11. 28. ~ ’23. 12. 17.(21일) ・강원 홍천(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등 8건) : ‘23. 11. 16. ~ ’23. 12. 6.(21일) ※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등 6건은 조정완화로 별도의 주민공람 생략

다. 주요내용

(1) 추진경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훈령 제662호, ‘22.11.30) 개정 등을 반영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2) 대상문화재 : 보물「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등 61건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1부.

▣ 보물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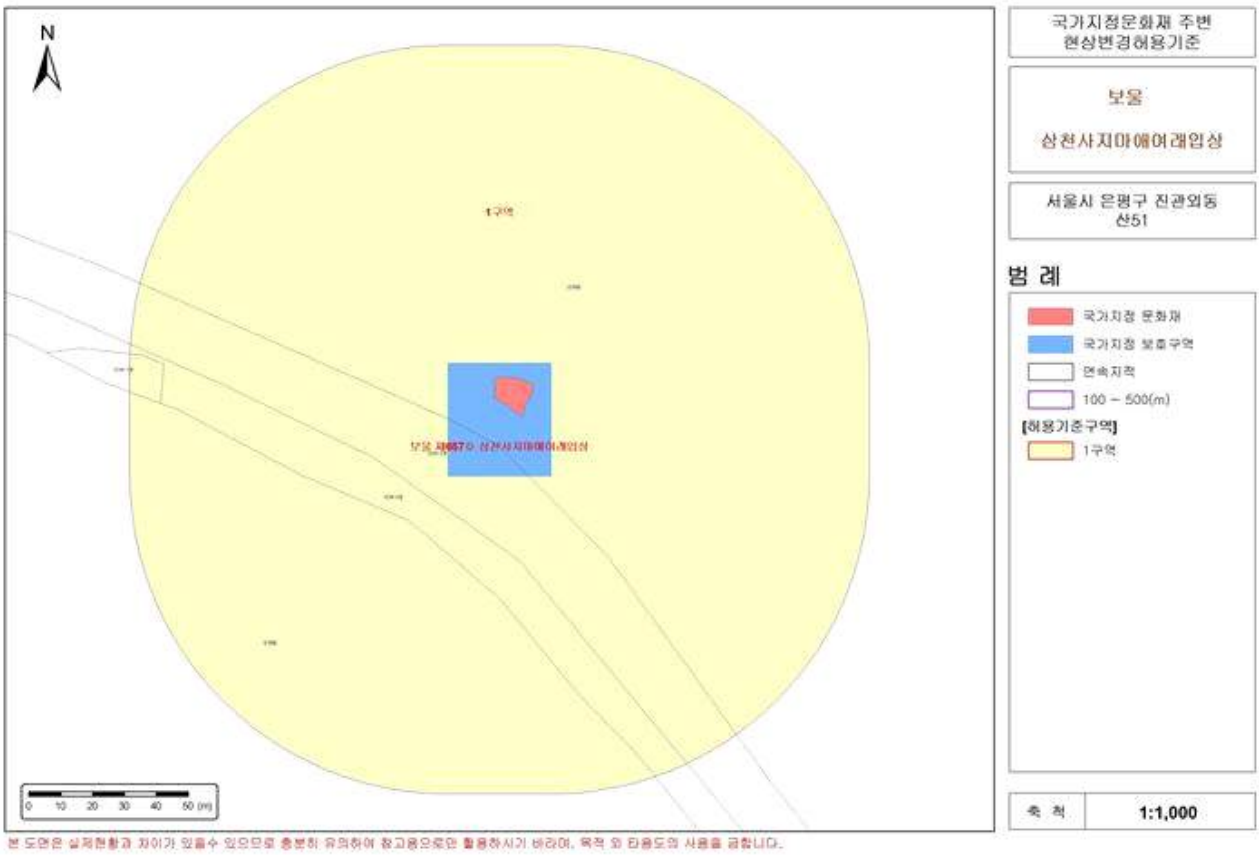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또는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보물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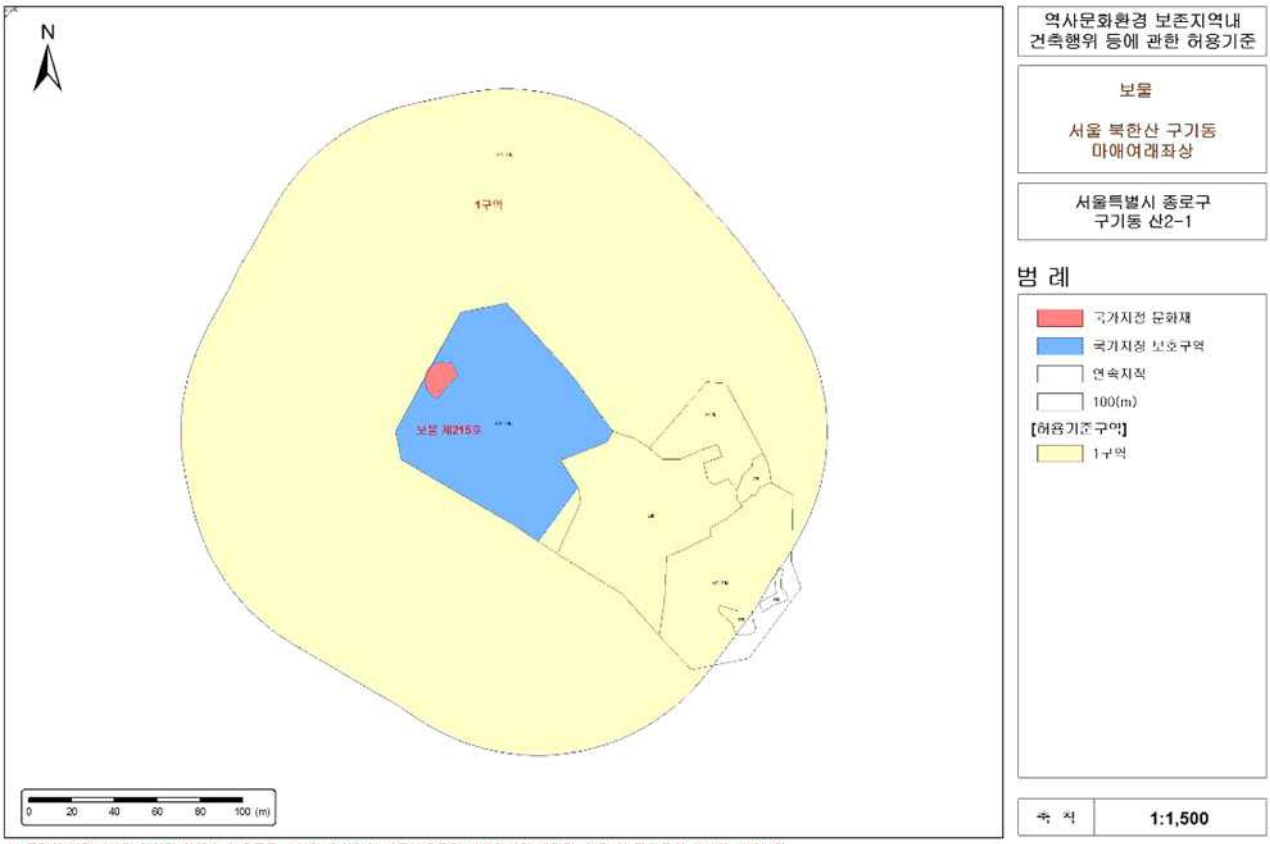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측적 외 다른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보물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부산 범어사 대웅전”, “부산 범어사 조계문”, 천연기념물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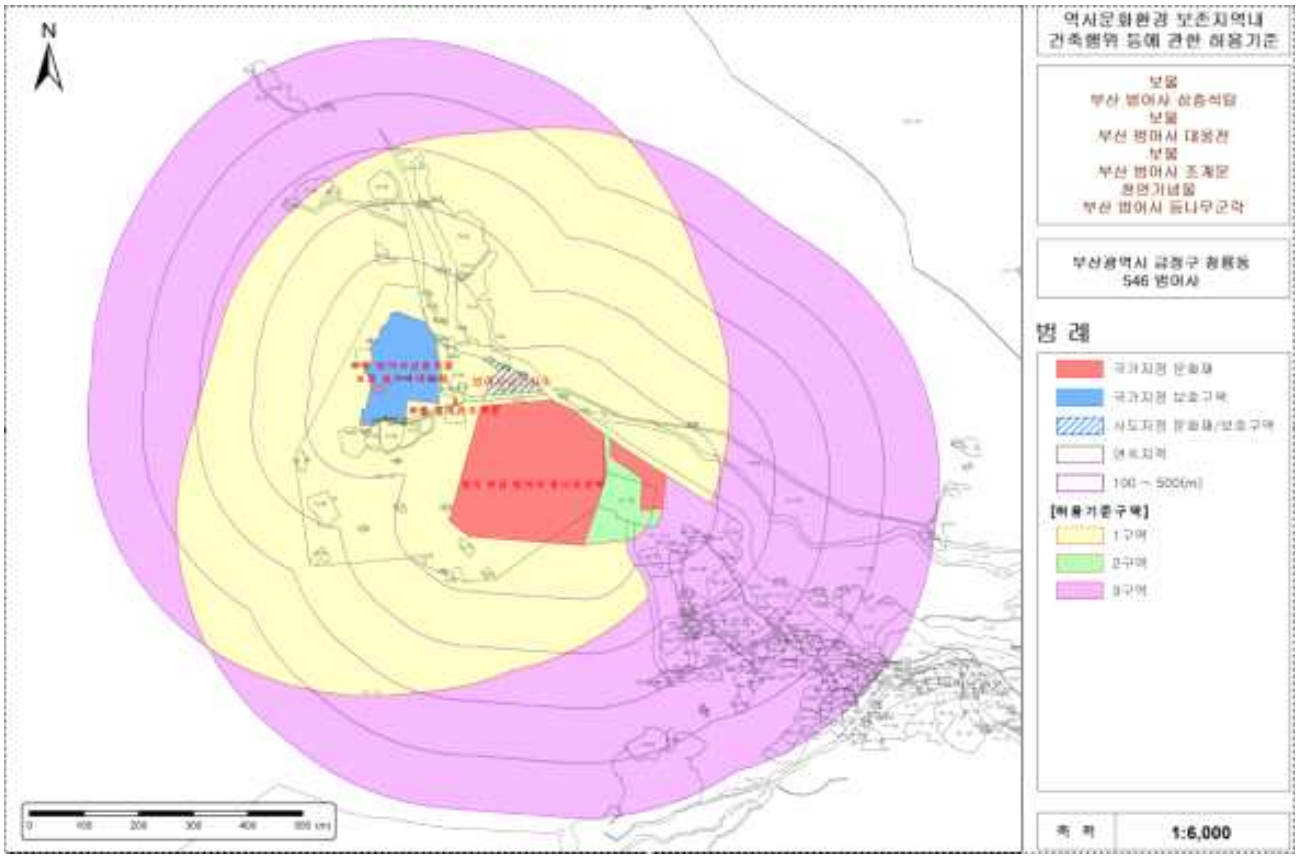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 · 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검토함.(단, 2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 ·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제3구역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 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검토함.(단, 2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 ·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보물 “부산 운수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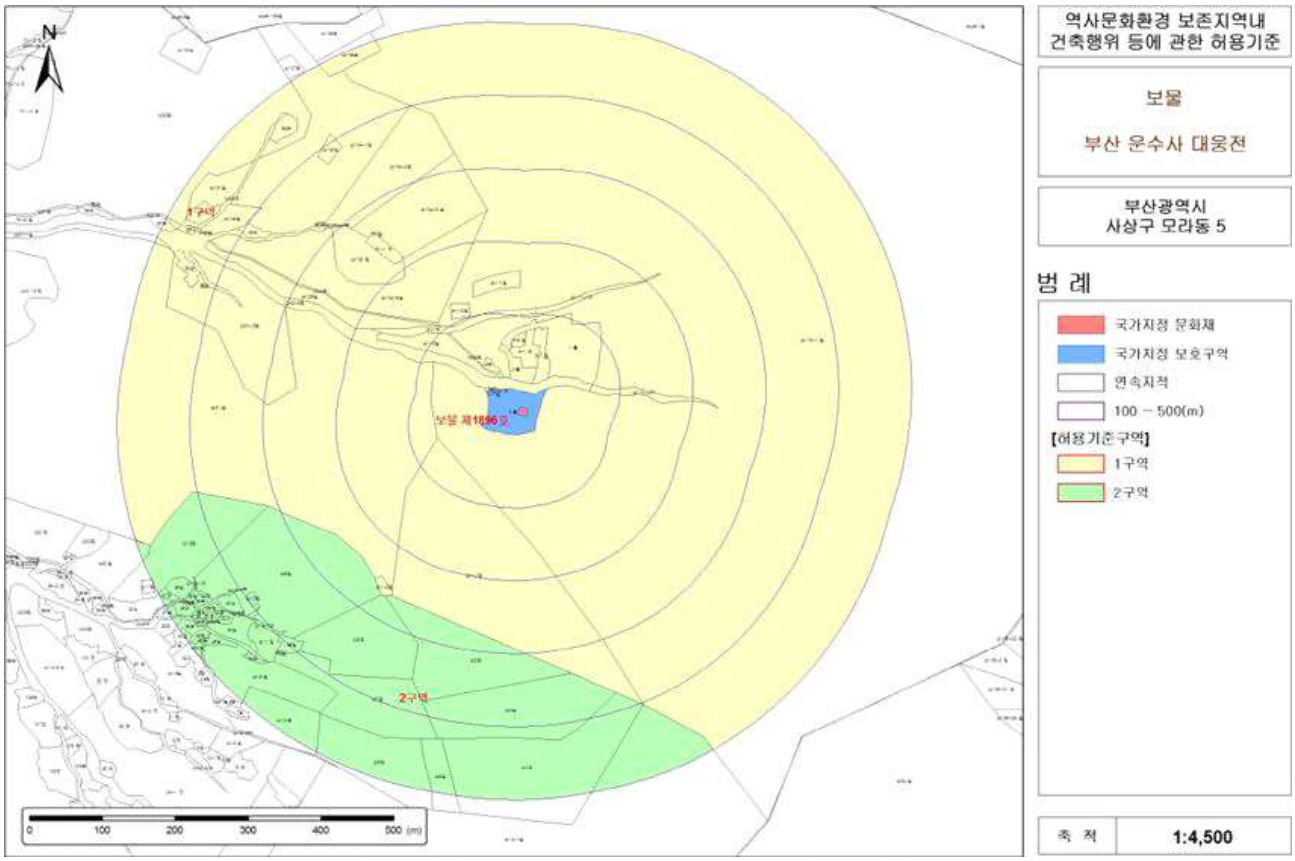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보물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 보물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보물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보물 “대구 동화사 당간지주”, 보물 “대구 도학동 승탑”, 보물 “대구 동화사 대웅전”, 보물 “대구 동화사 극락전”, 보물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보물 “대구 동화사 봉황문”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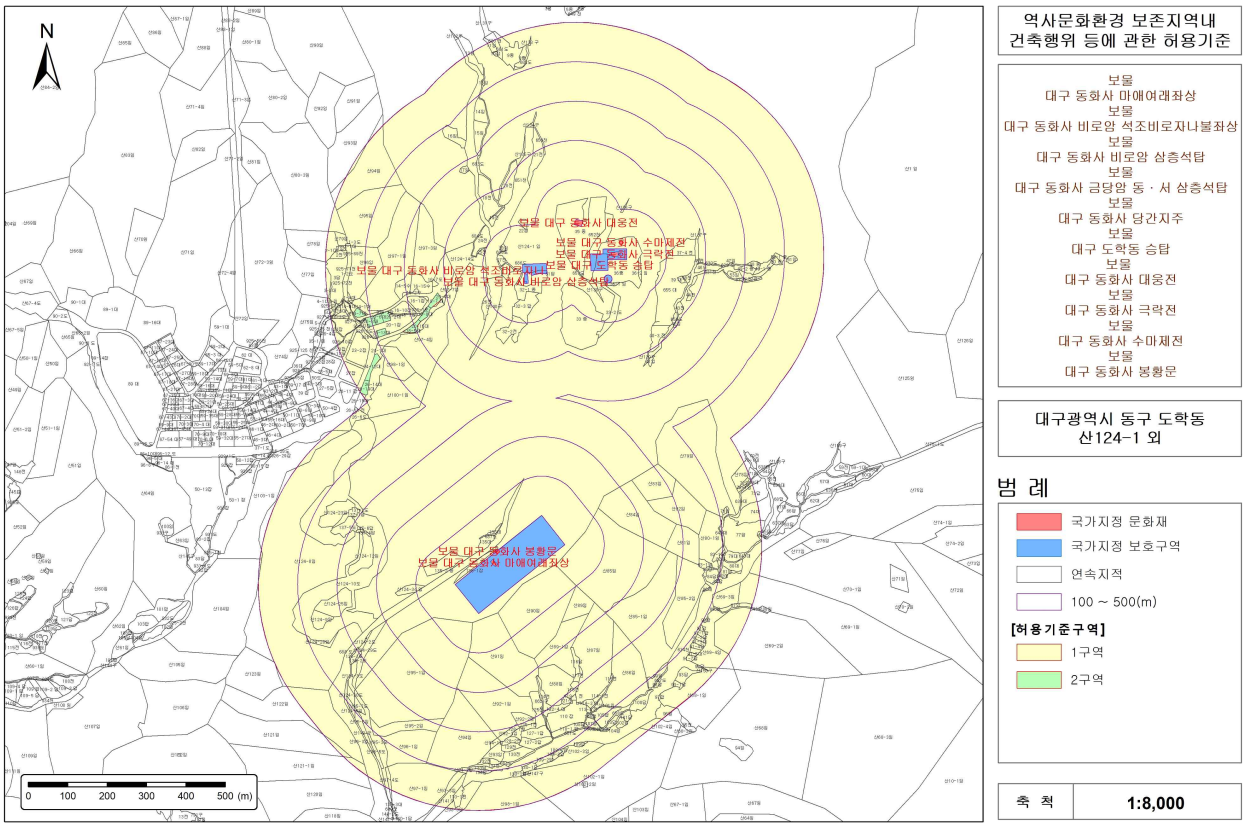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검토(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검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검토(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태양광 시설은 면적 20㎡ 미만으로 설치가능(단, 2구역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검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2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에는 허용기준 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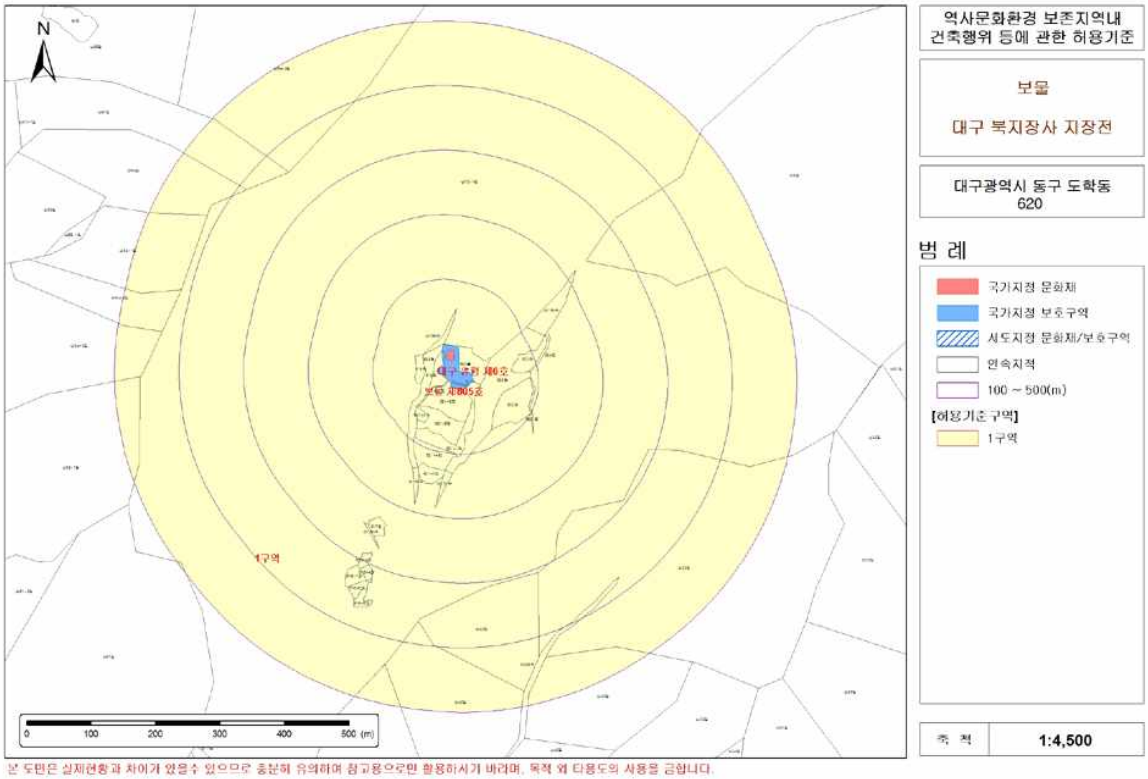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대구 파계사 원통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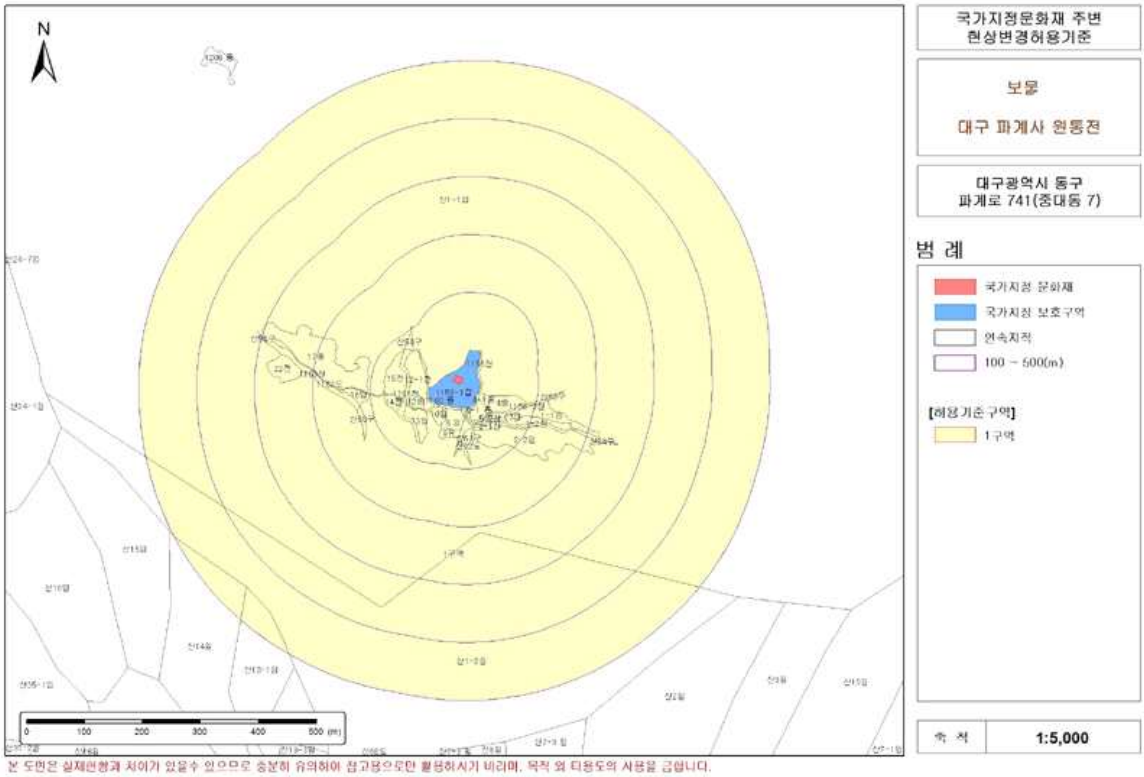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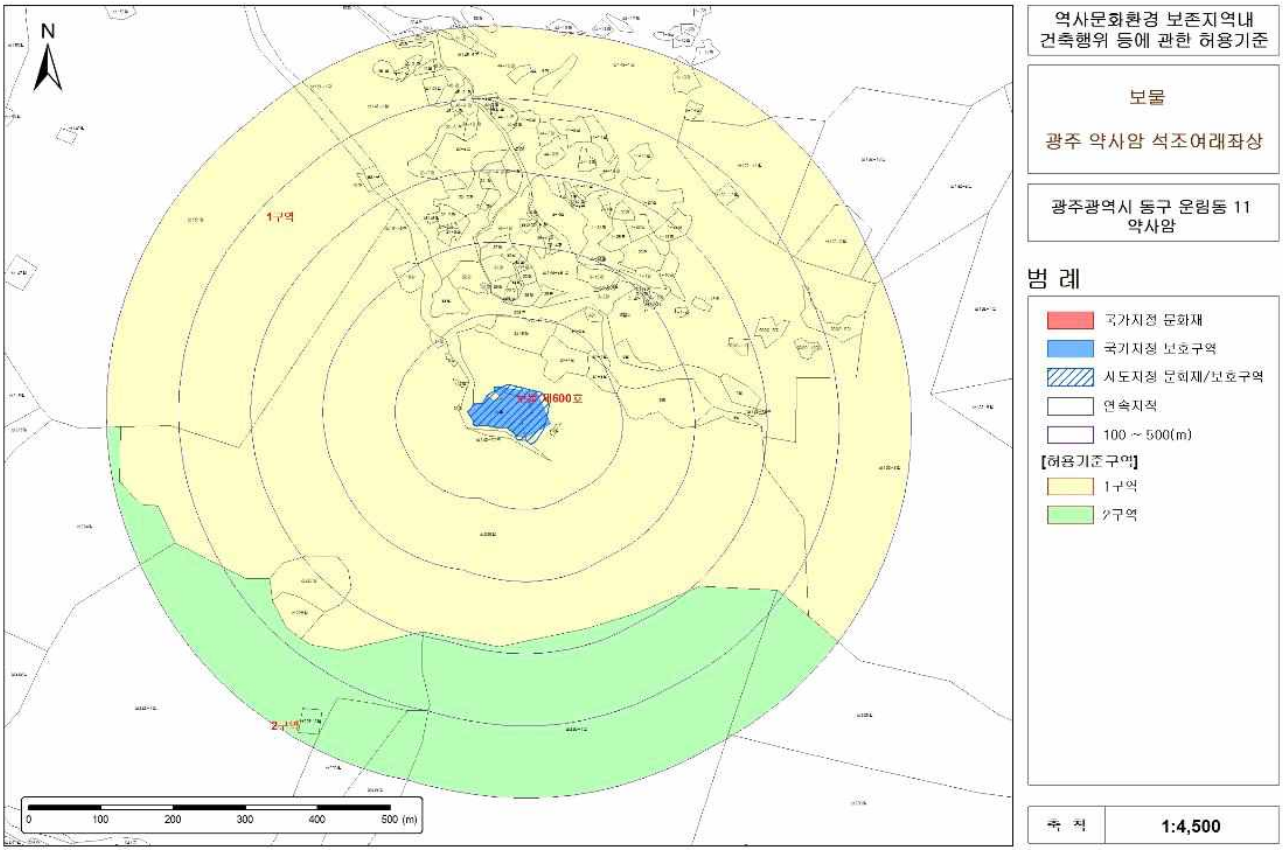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울주 석남사 승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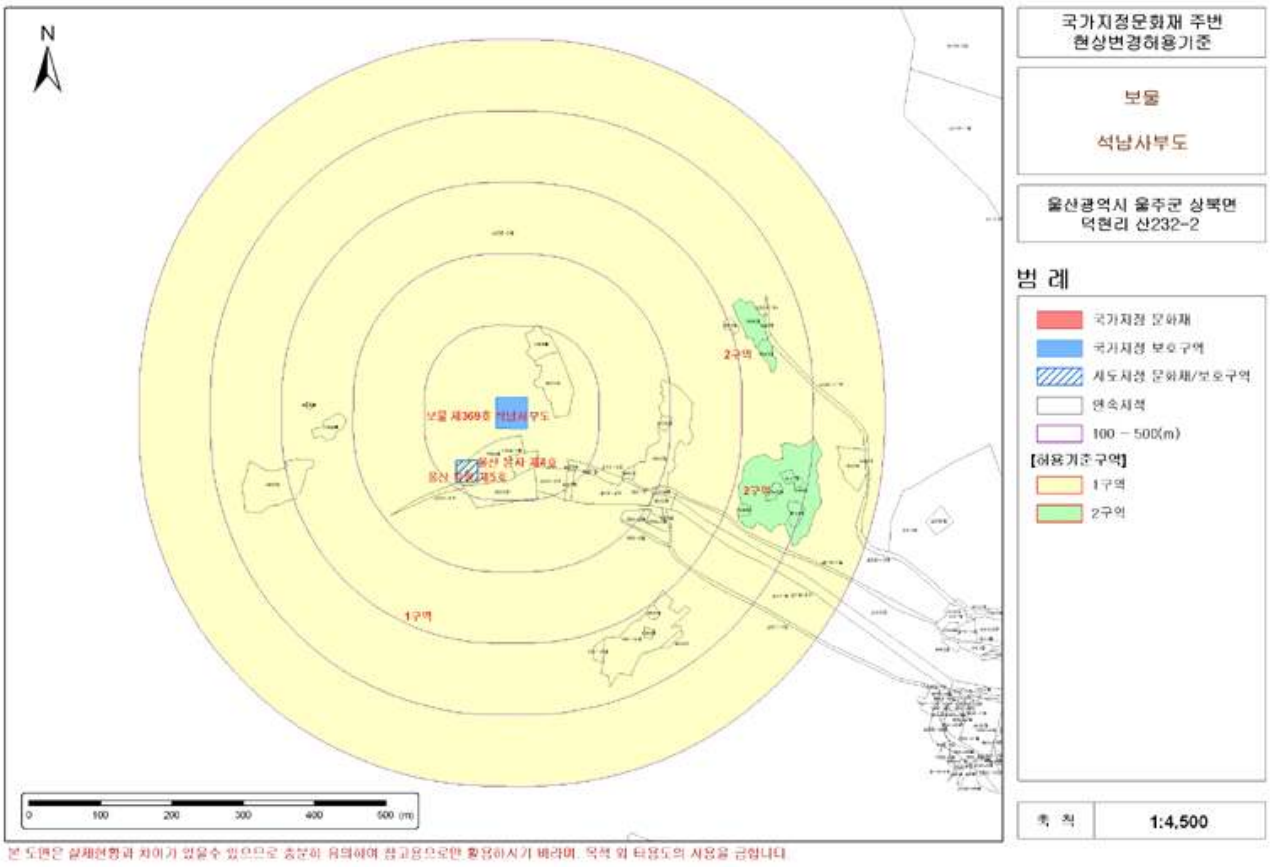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보물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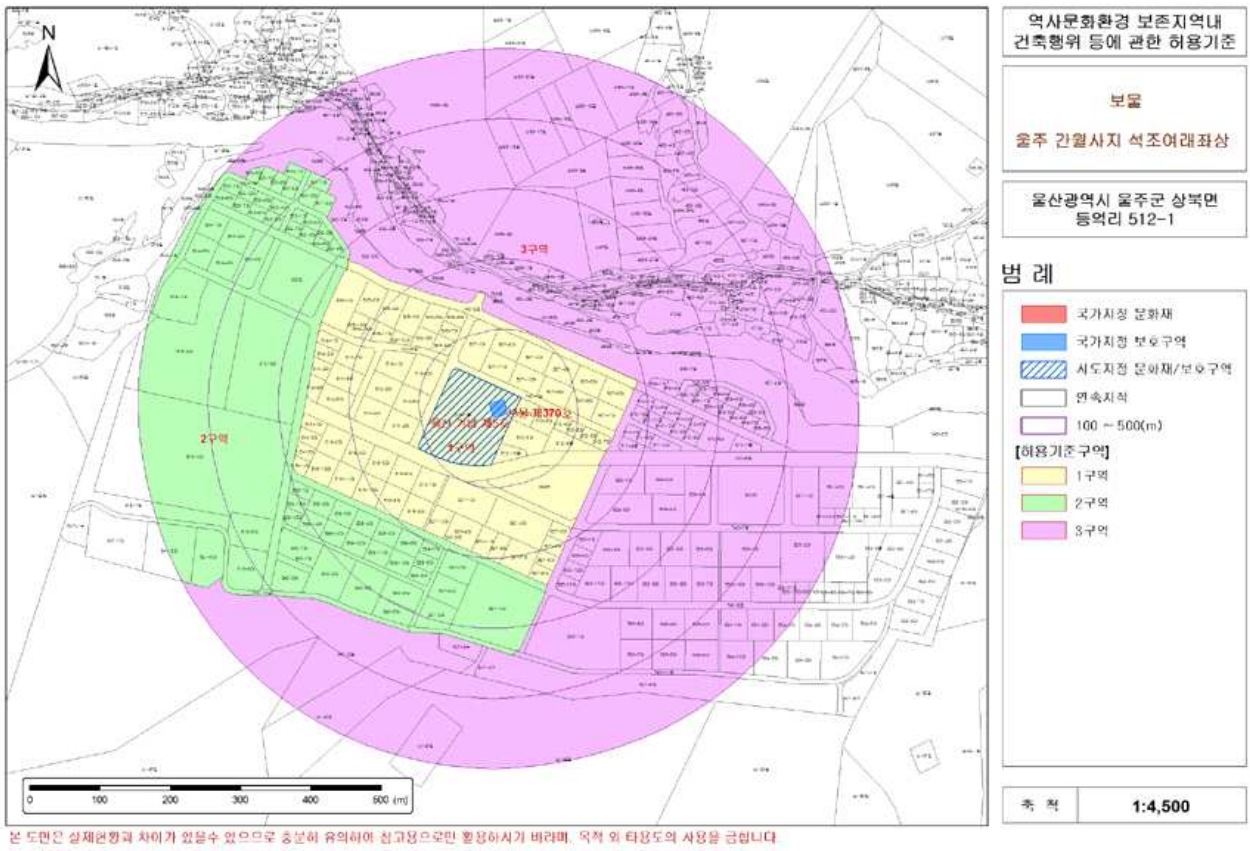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개별심의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검토함.(2구역 적용)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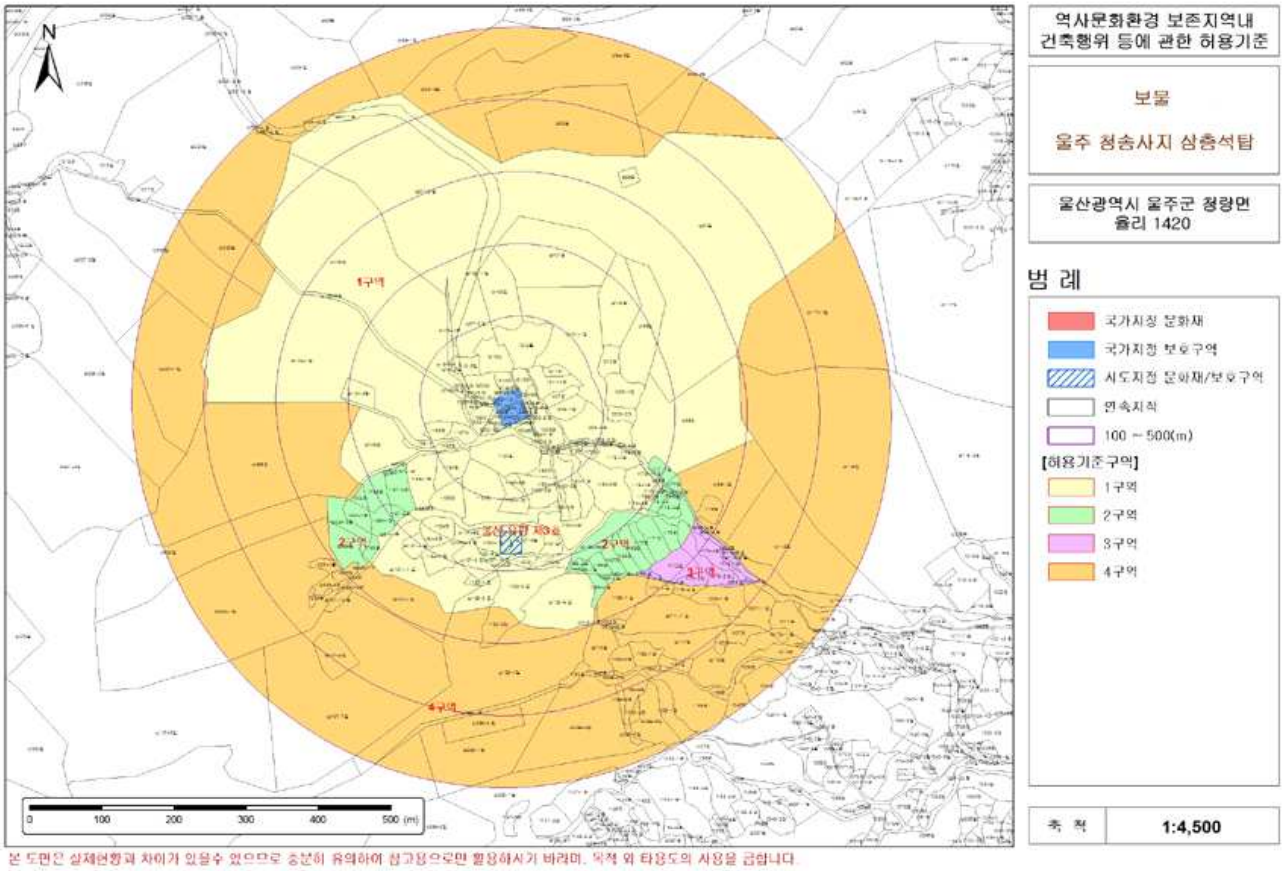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제4구역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 개별검토함.(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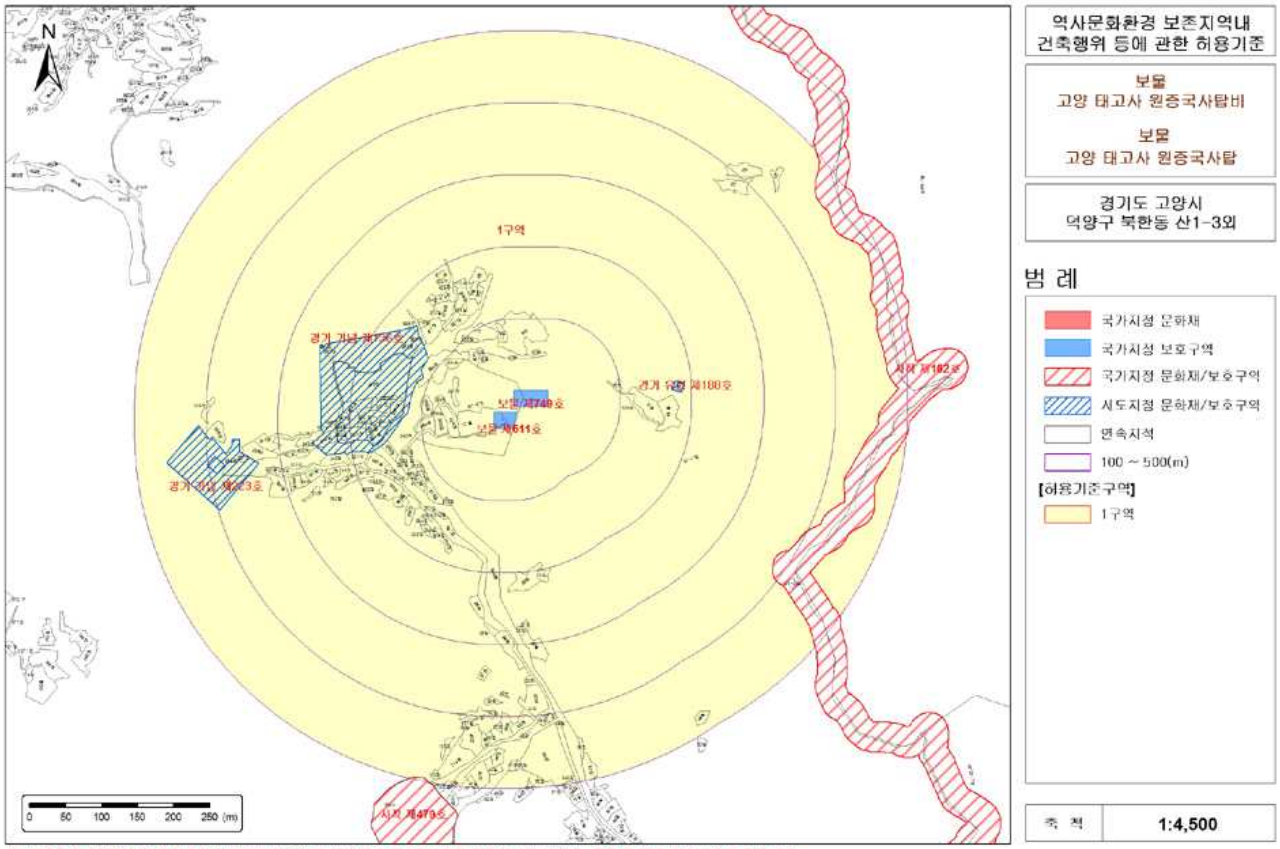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보물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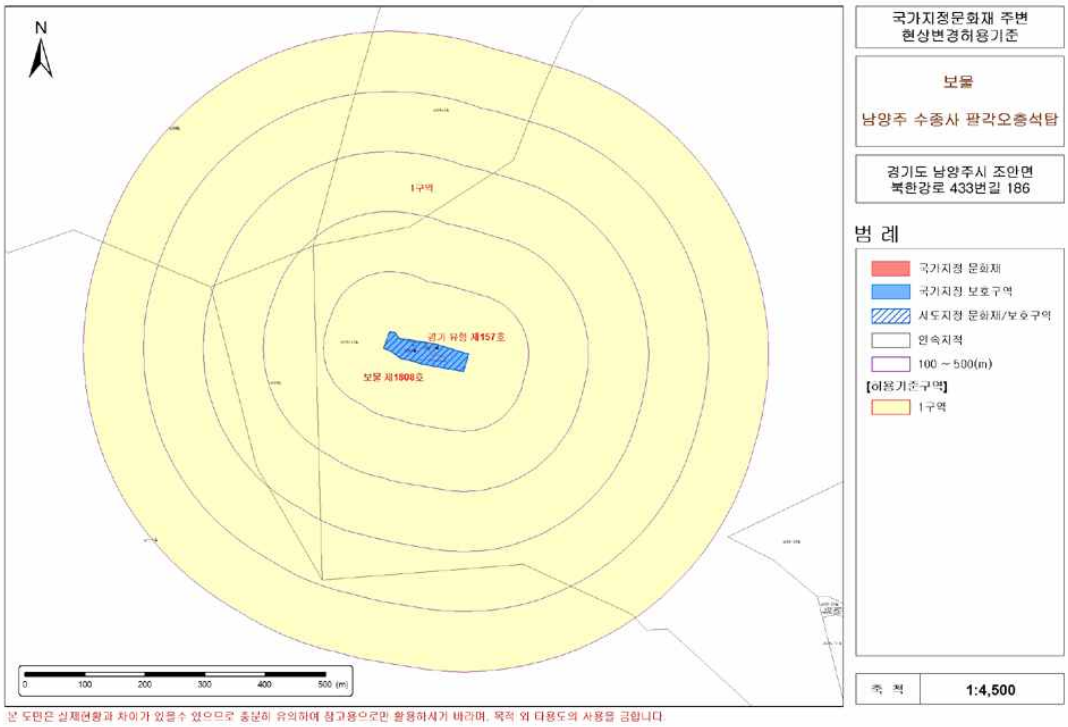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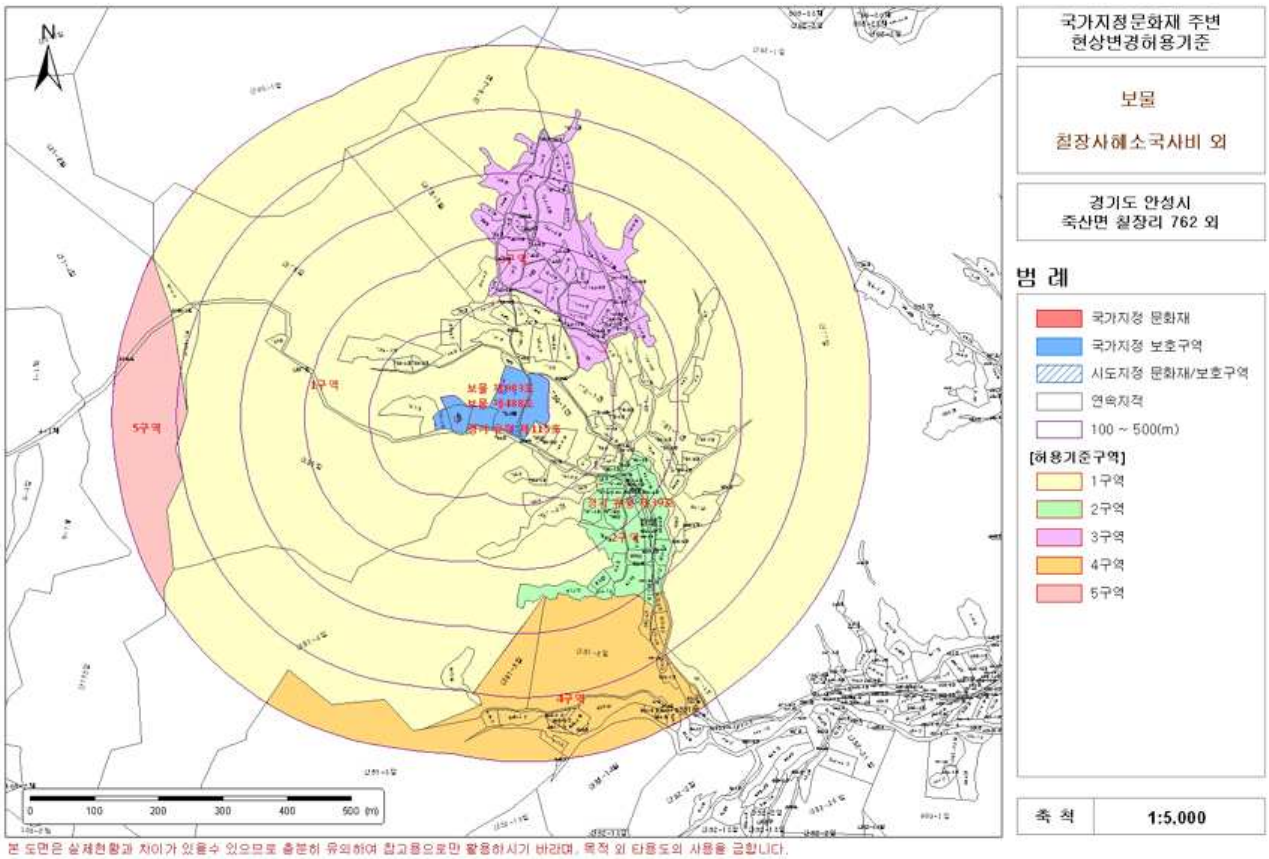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또는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단, 제1·2·3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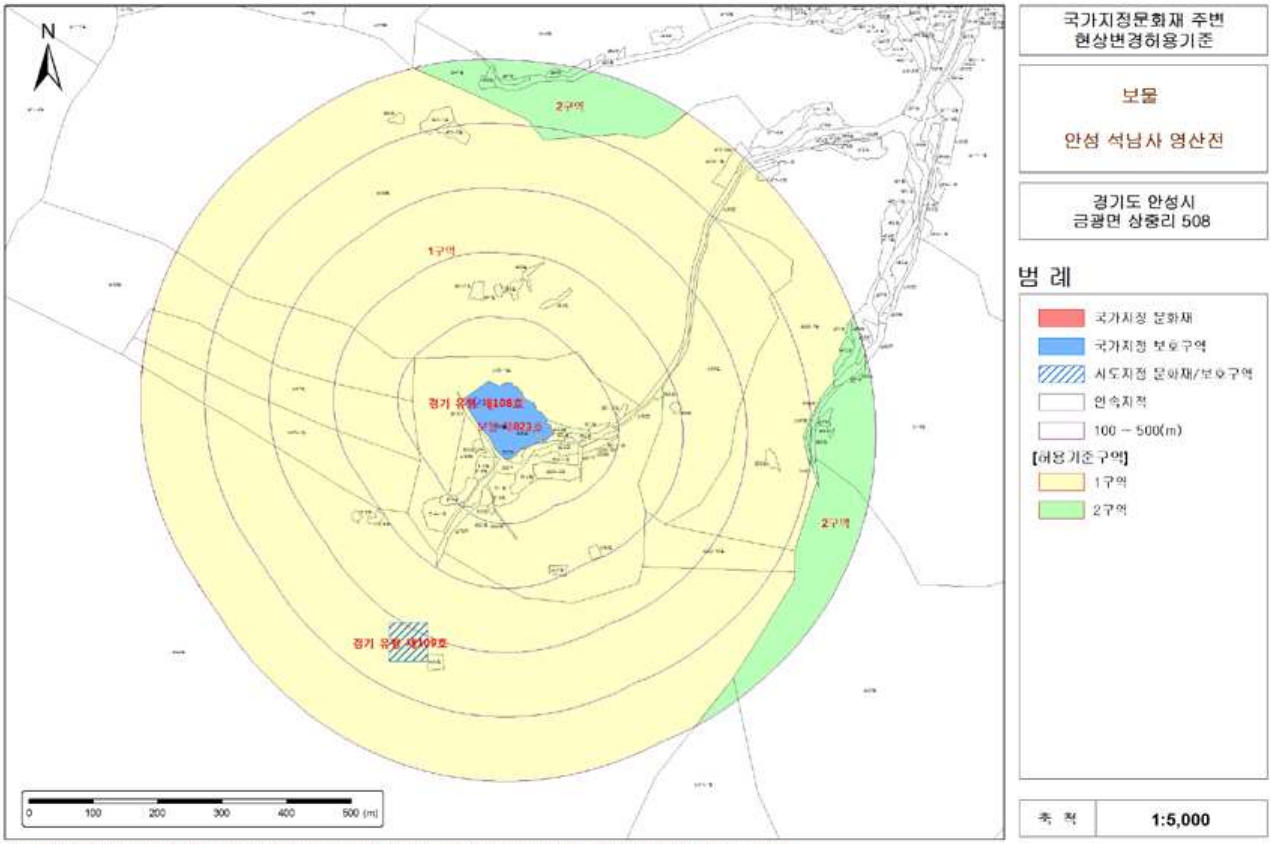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안성 청룡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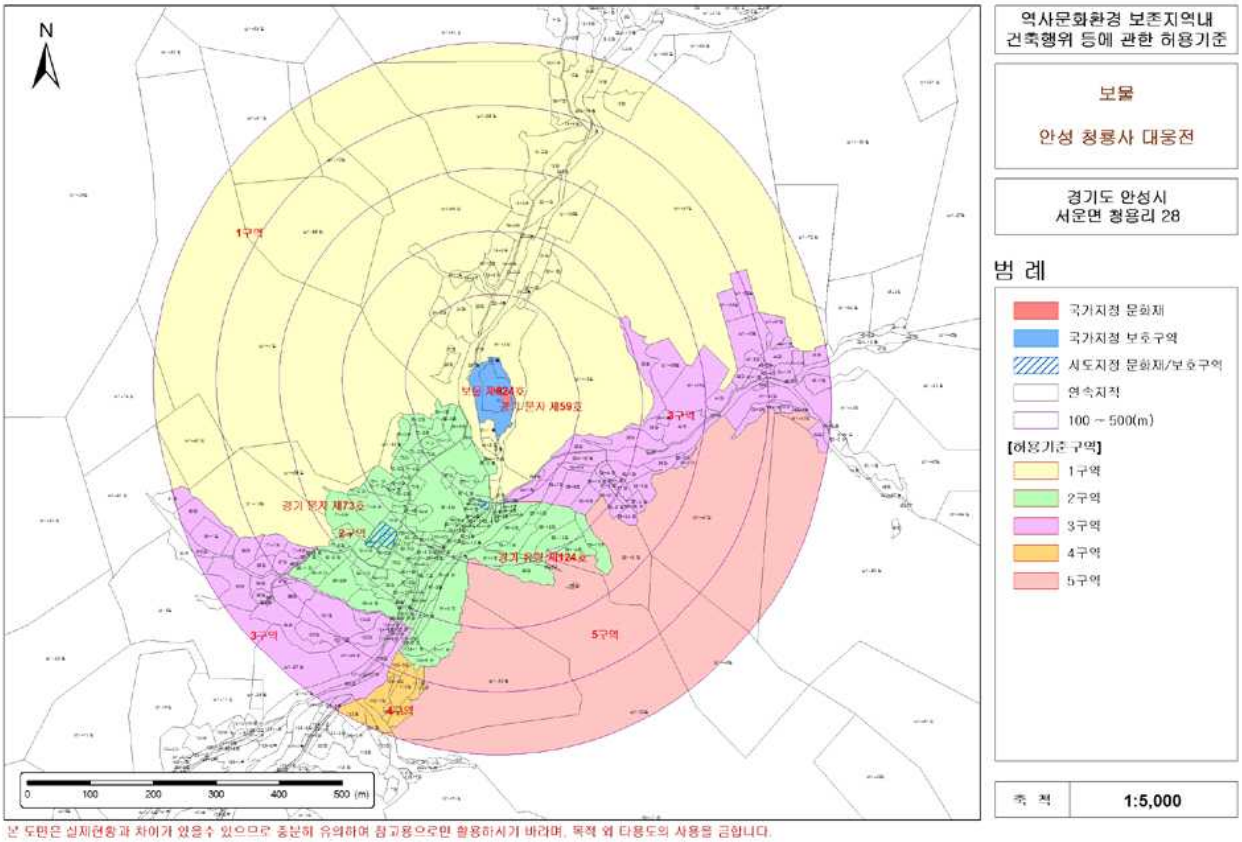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또는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단, 제1·2·3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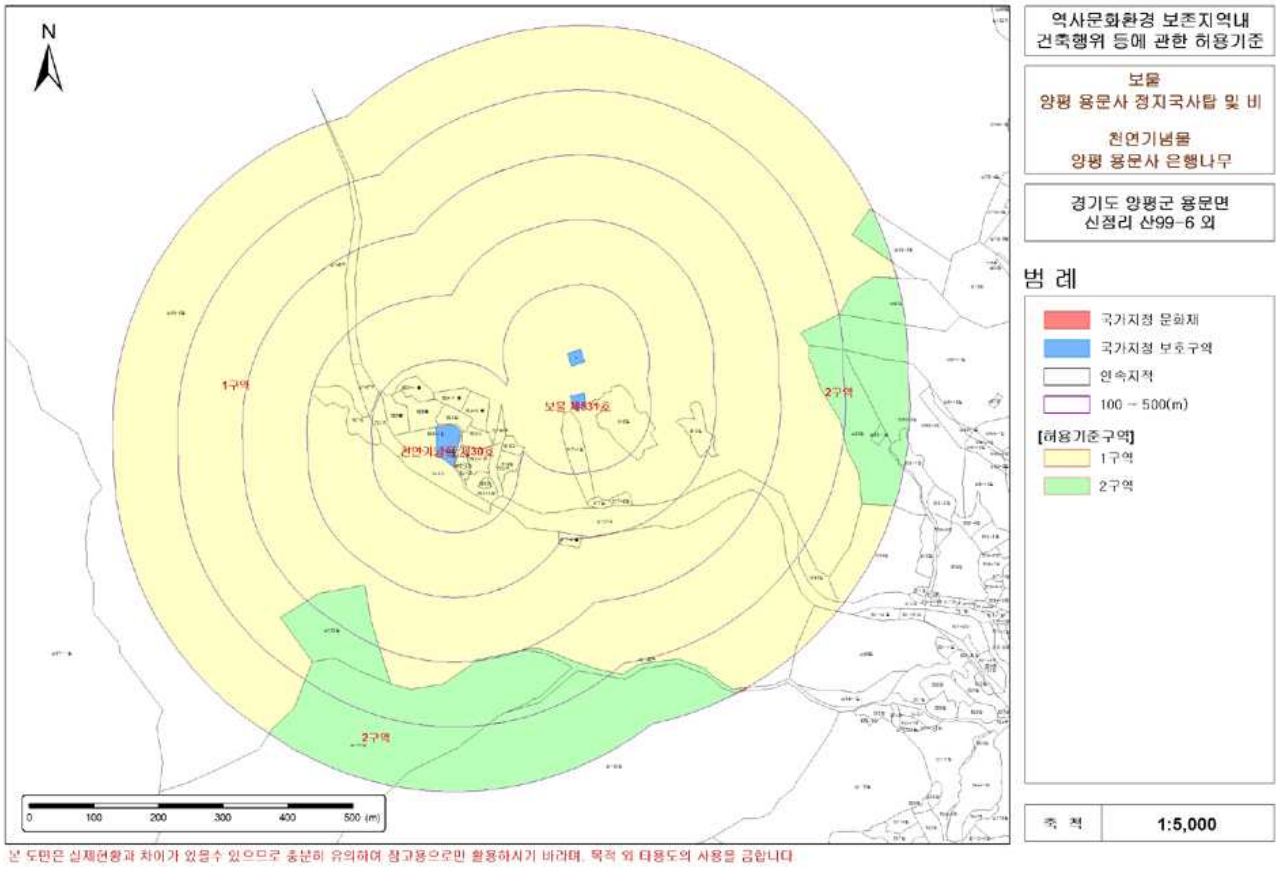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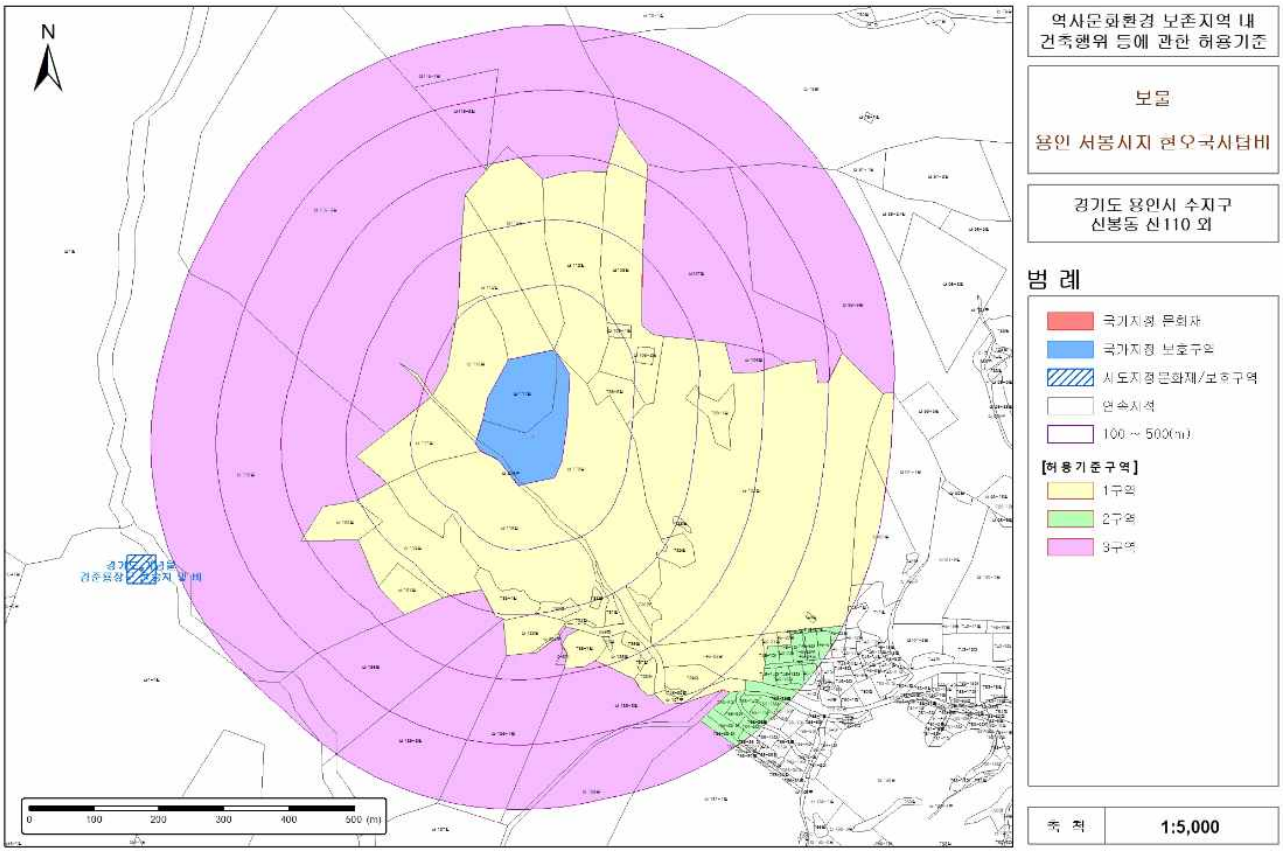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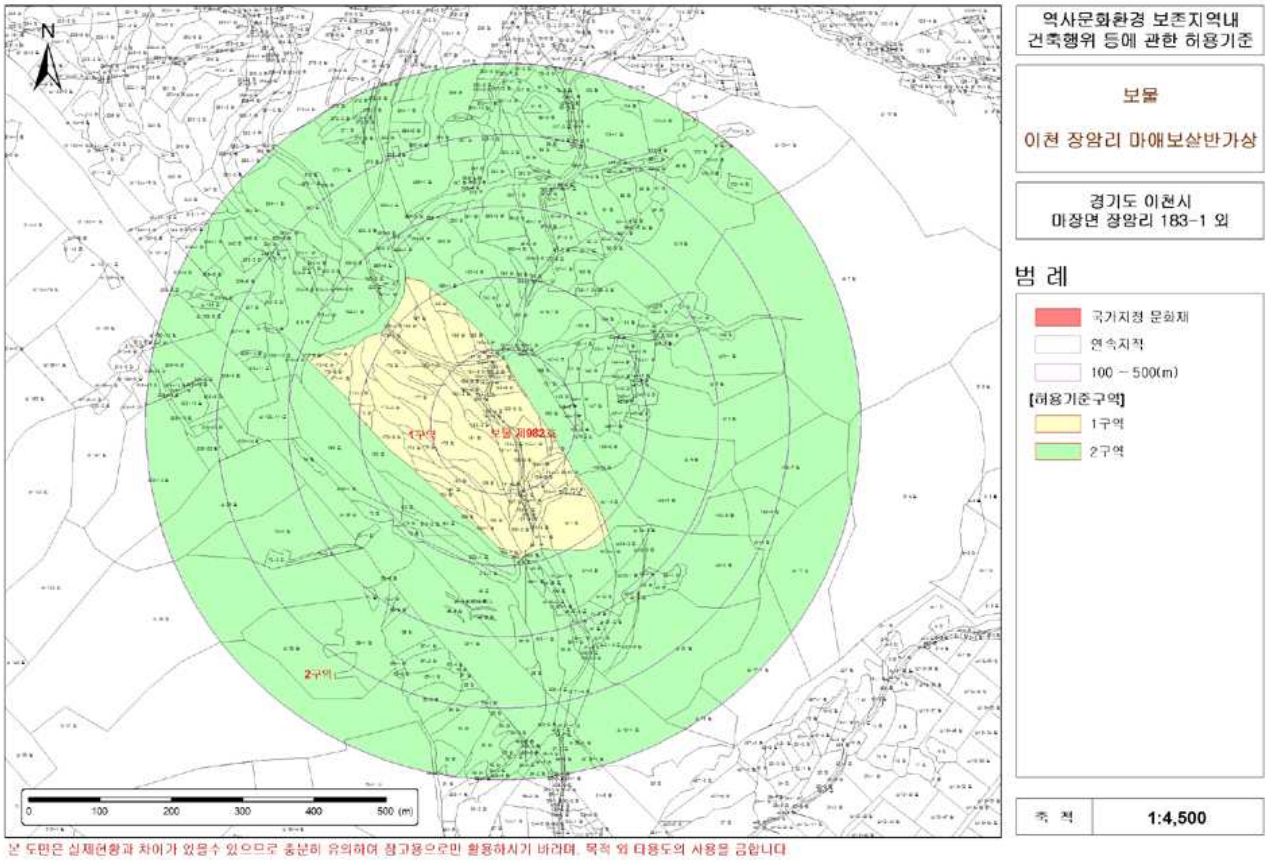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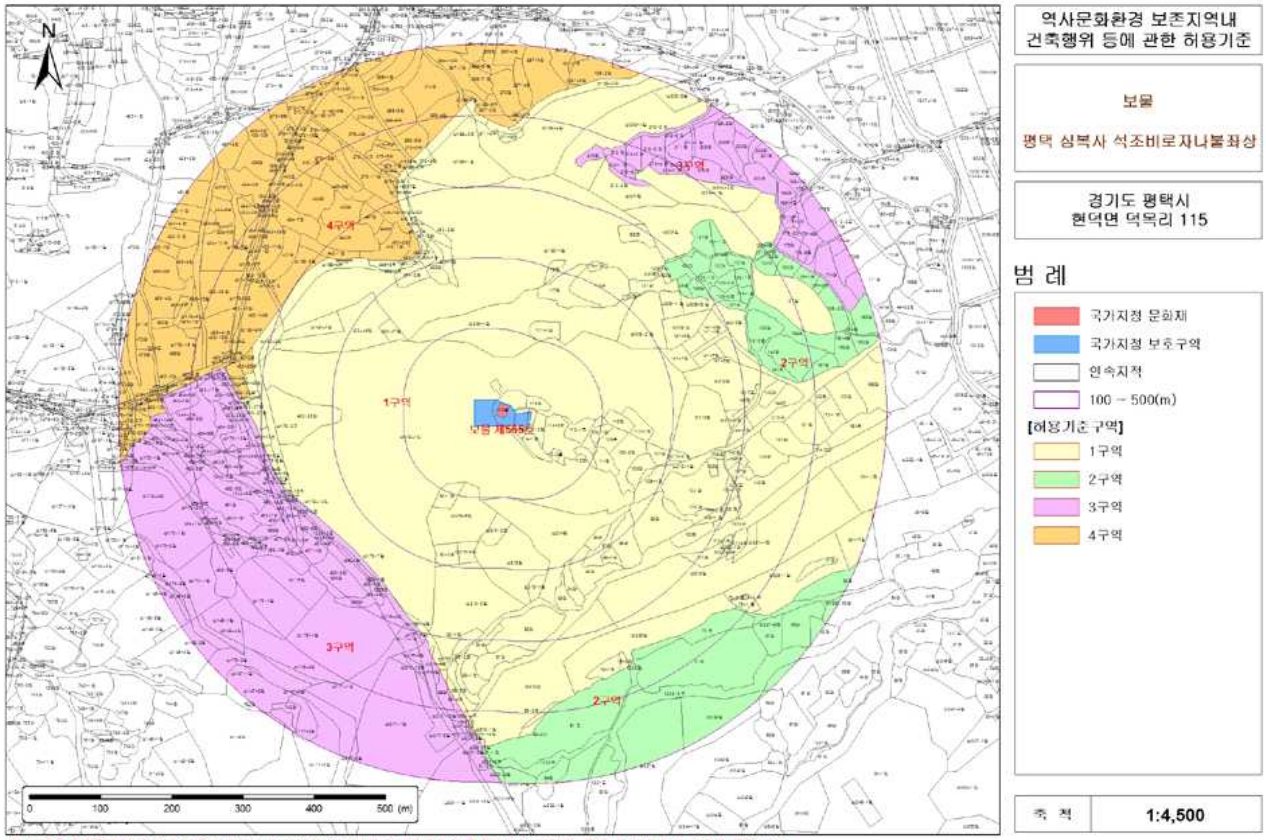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강릉 대창리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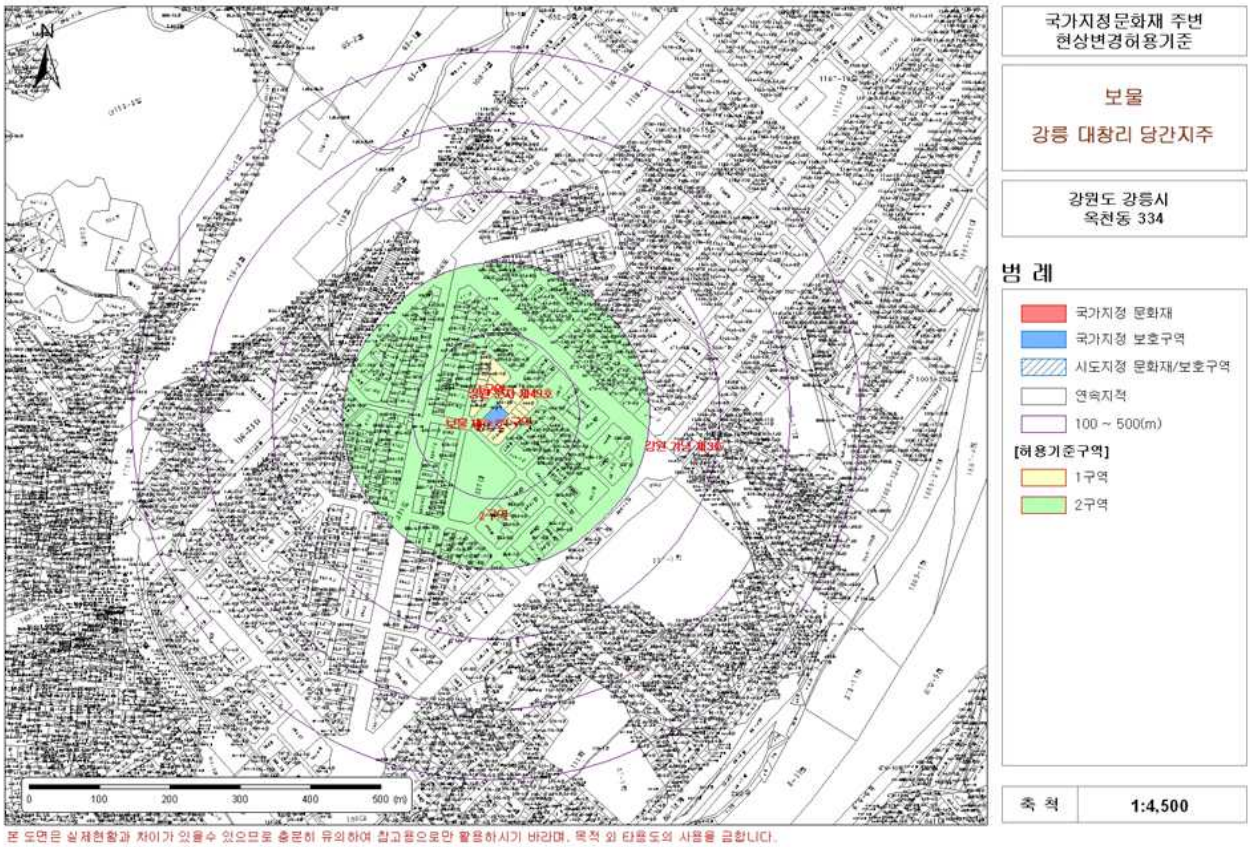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이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전체 구역에서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이하	
제2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전체 구역에서~~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강릉 수문리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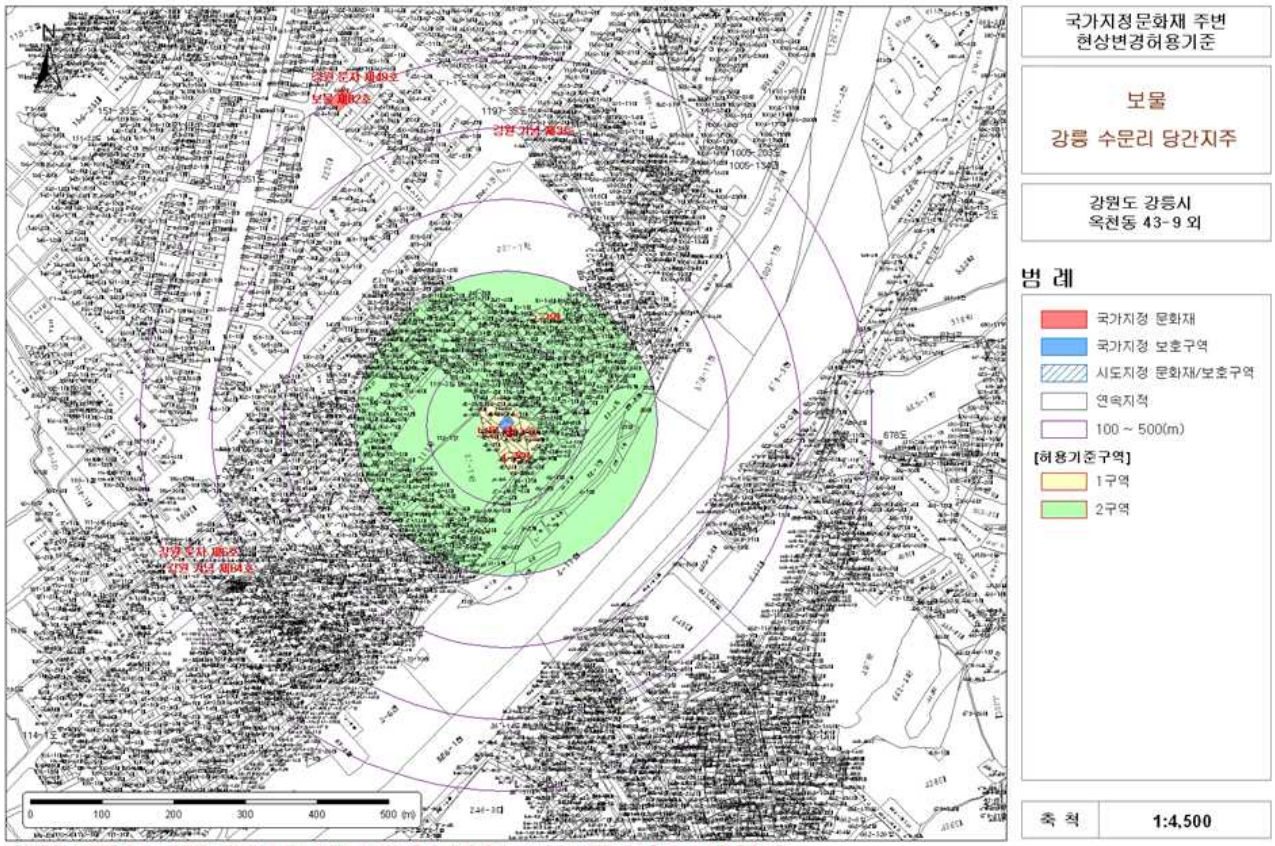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이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전체 구역에서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이하	
제2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전체 구역에서~~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강릉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 “강릉 신복사지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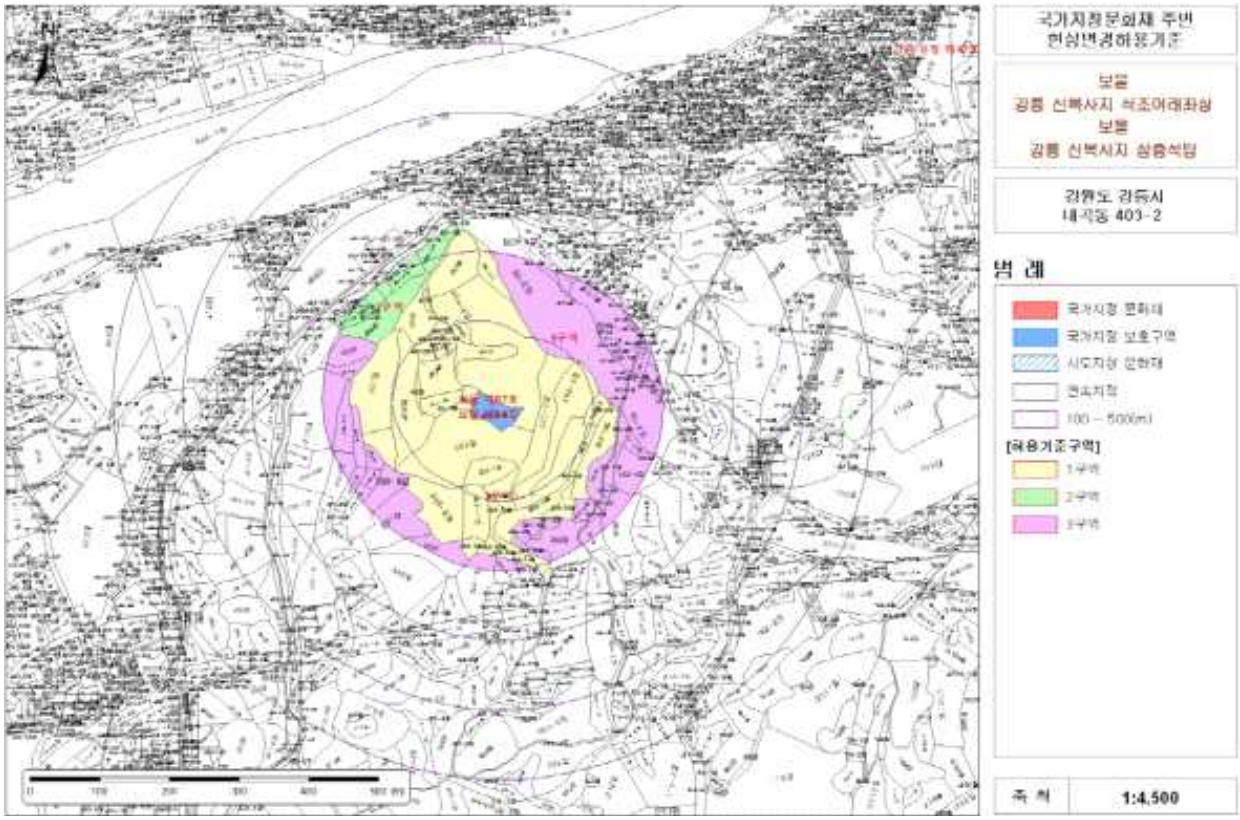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전체 구역에서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제3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전체 구역에서~~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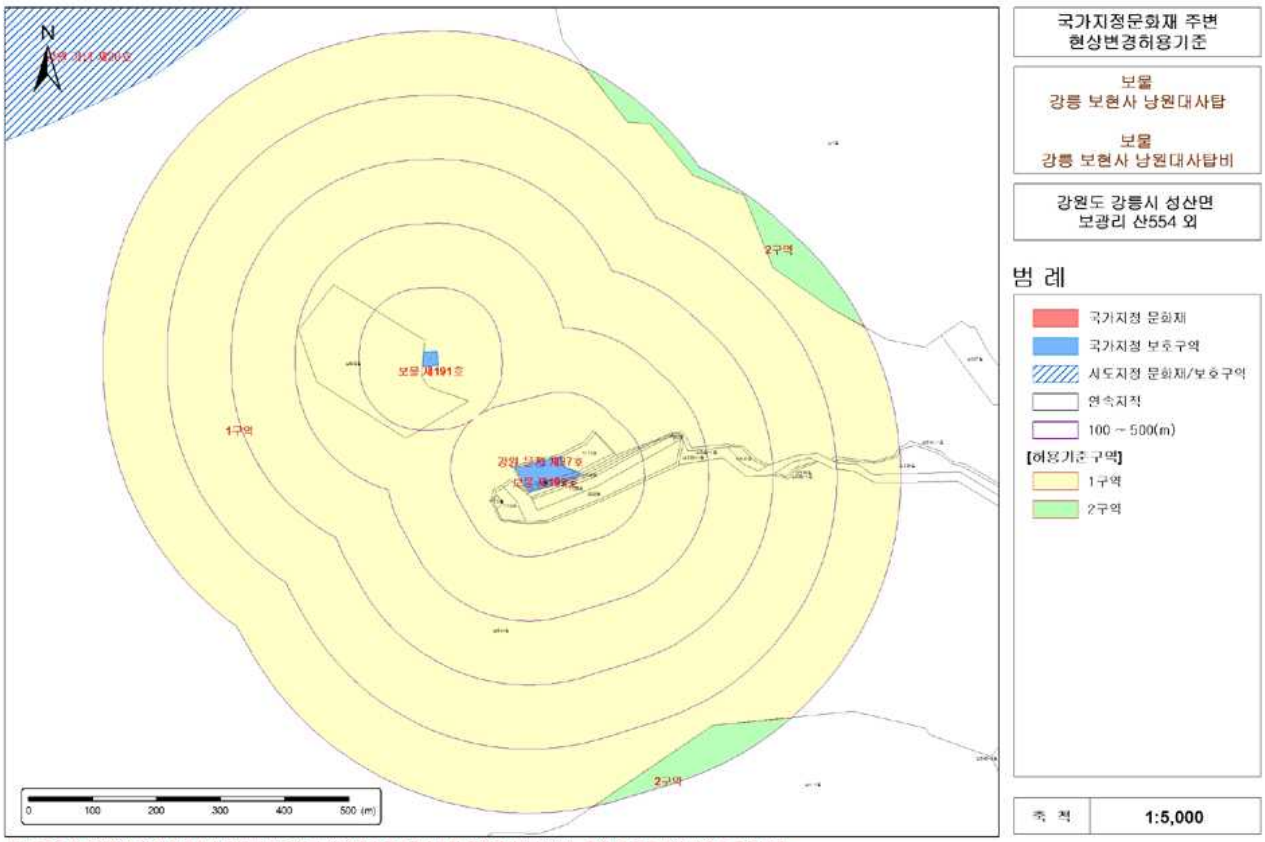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검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강릉향교 대성전”, “강릉향교 명륜당”, “강릉향교 동무·서무·전랑” 주변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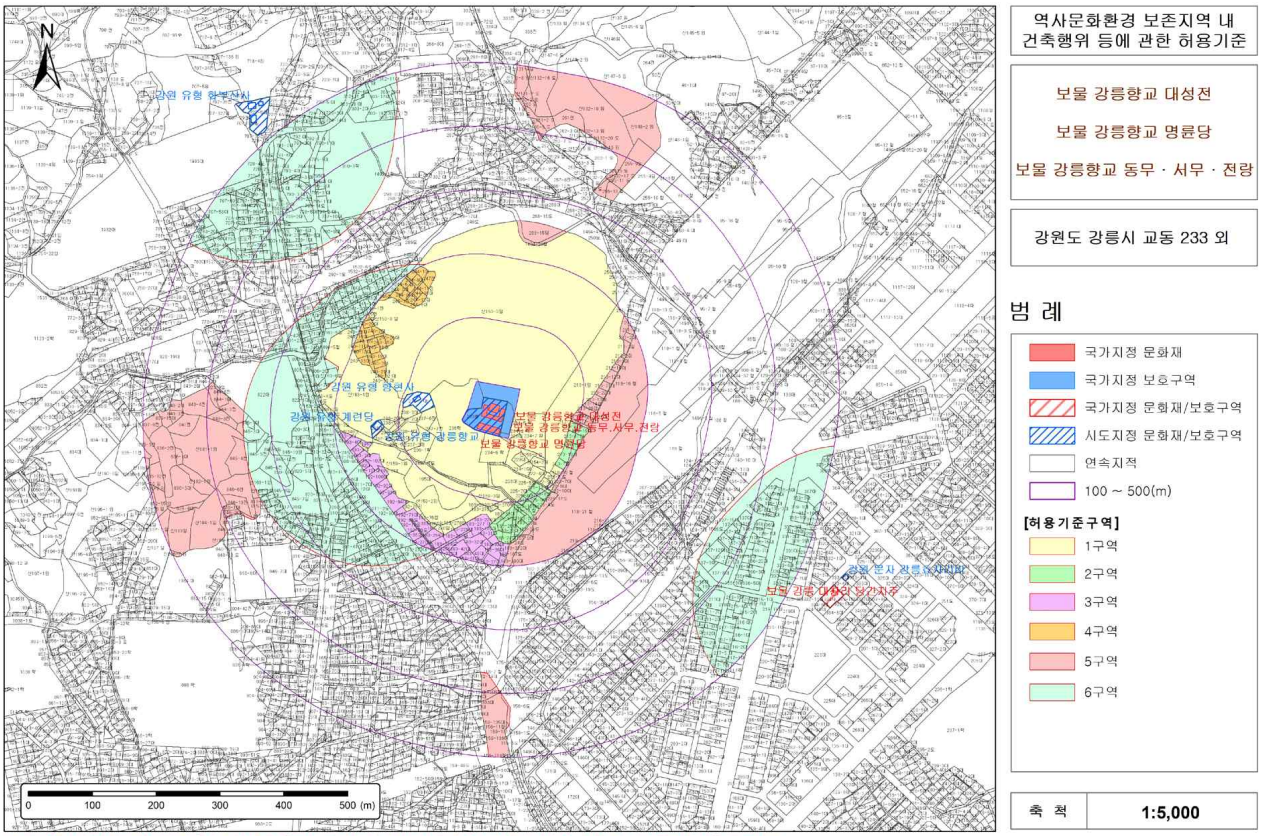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복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14m이하	○ 최고높이 18m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7m이하	○ 최고높이 21m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23m이하	○ 최고높이 27m이하	
제5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강릉 대창리 당간지주), 강원도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향현사, 유형문화재 계련당, 유형문화재 화부산사, 문화재자료 강릉 효자리비)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함(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14m이하	○ 최고높이 18m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7m이하	○ 최고높이 21m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23m이하	○ 최고높이 27m이하	
제5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강릉 대창리 당간지주) 및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화부산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적용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함(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고성 육송정 홍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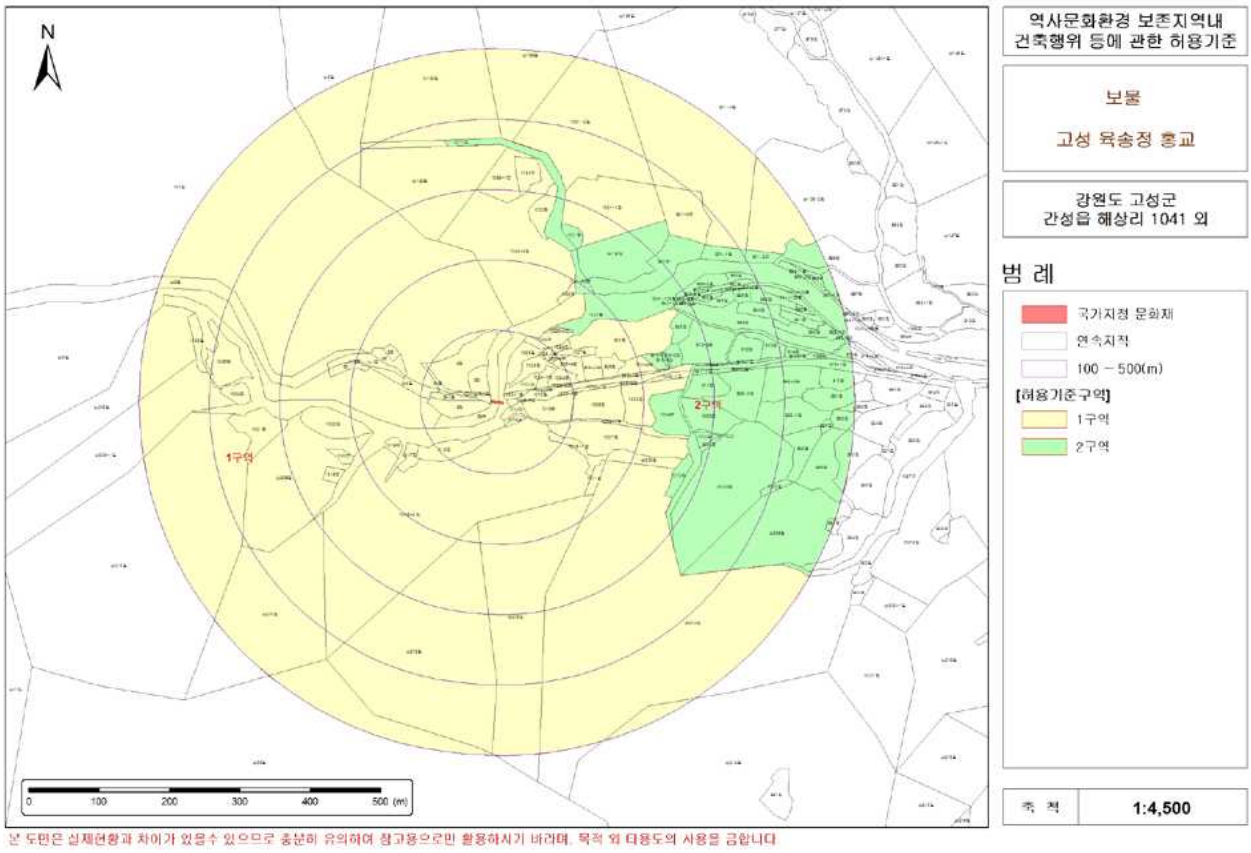

본 도판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고성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설치제한(전 구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국보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보물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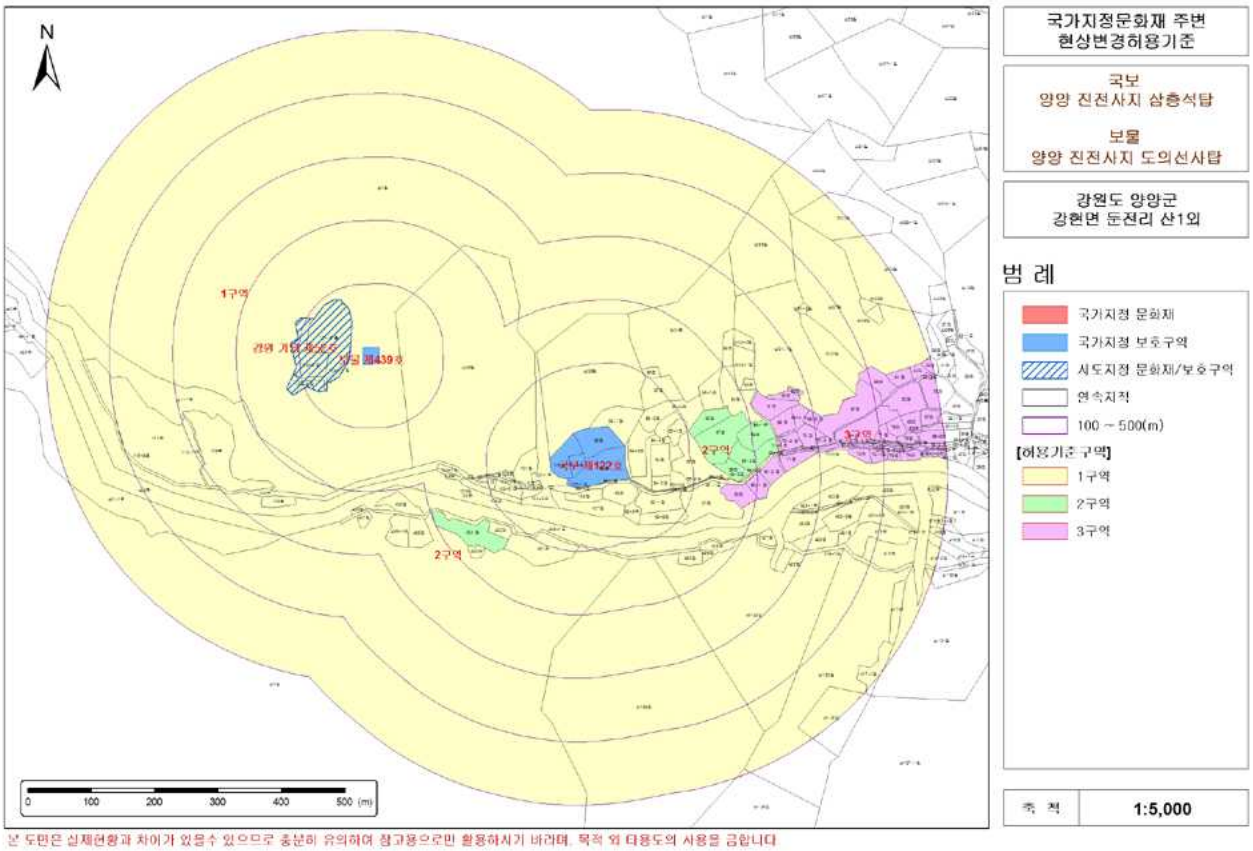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 개별검토함.(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양양 선림원지 석등”, “양양 선림원지 흥각선사 탑비”, “양양 선림원지 승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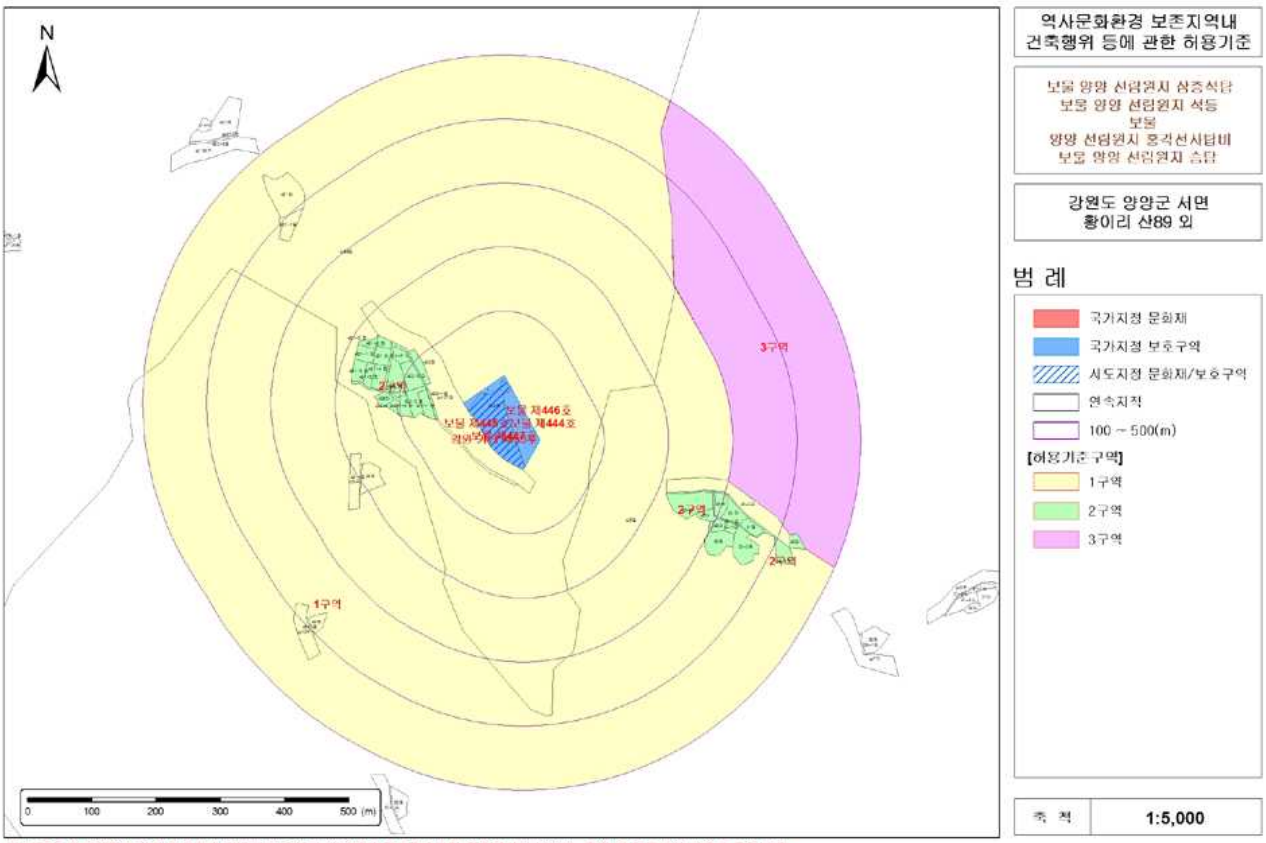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개별심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양양군 군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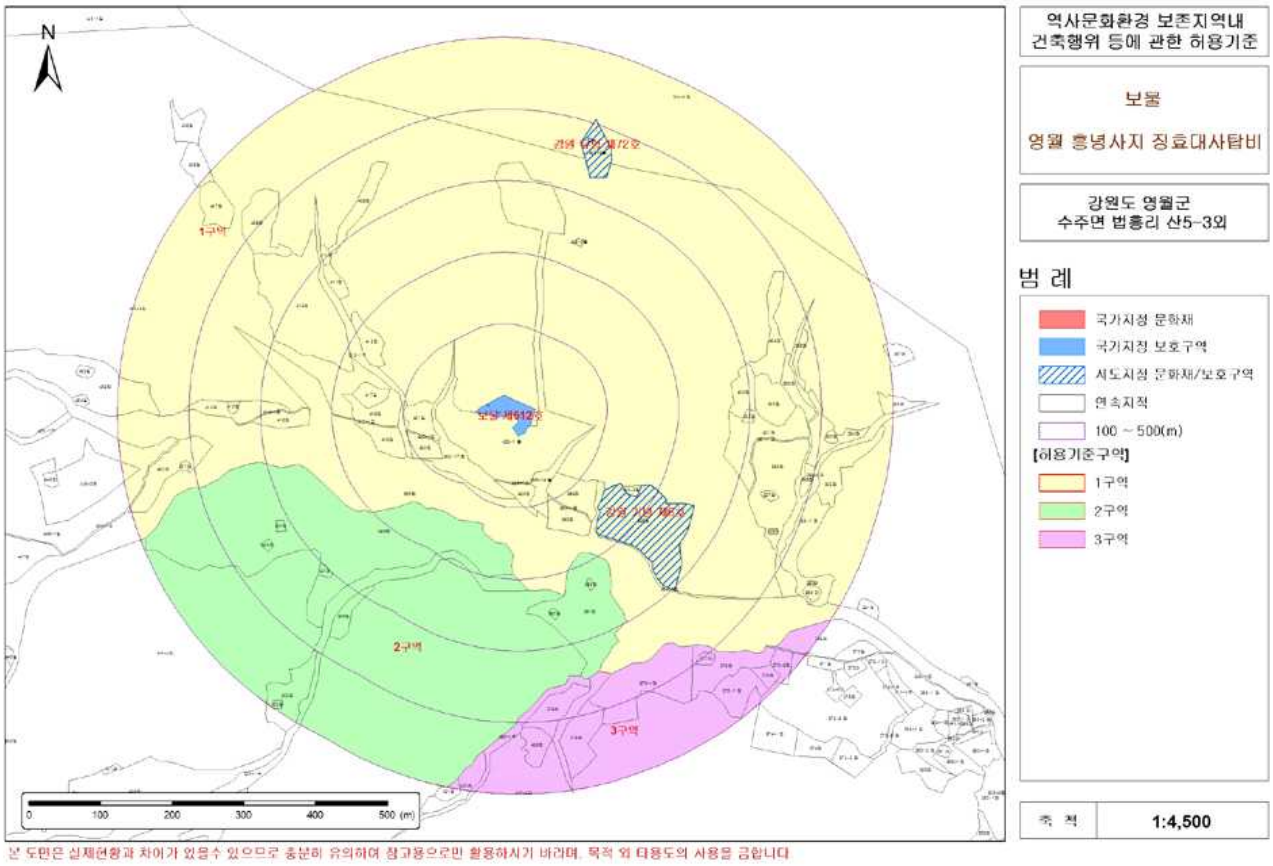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0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영월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제한(전구역) -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설치제한(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이내)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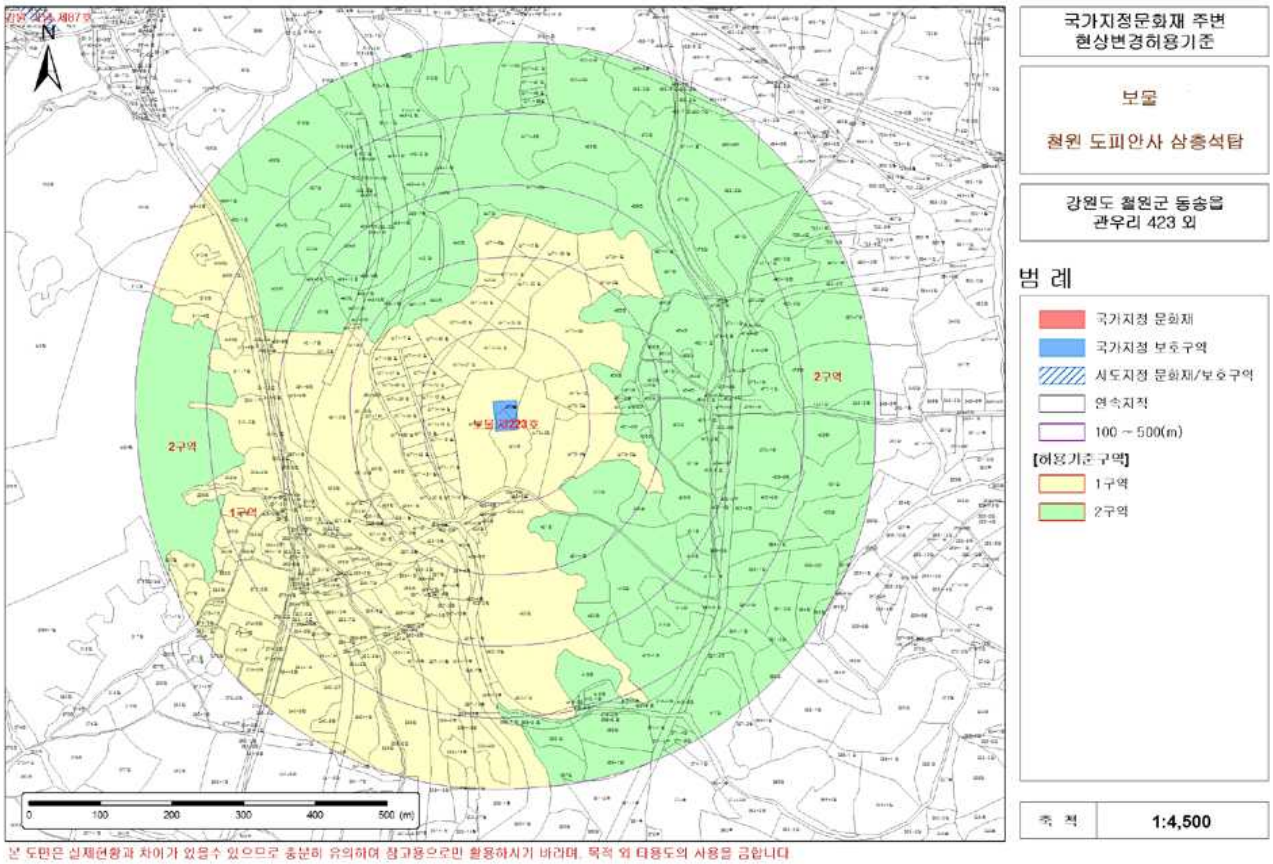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춘천 칠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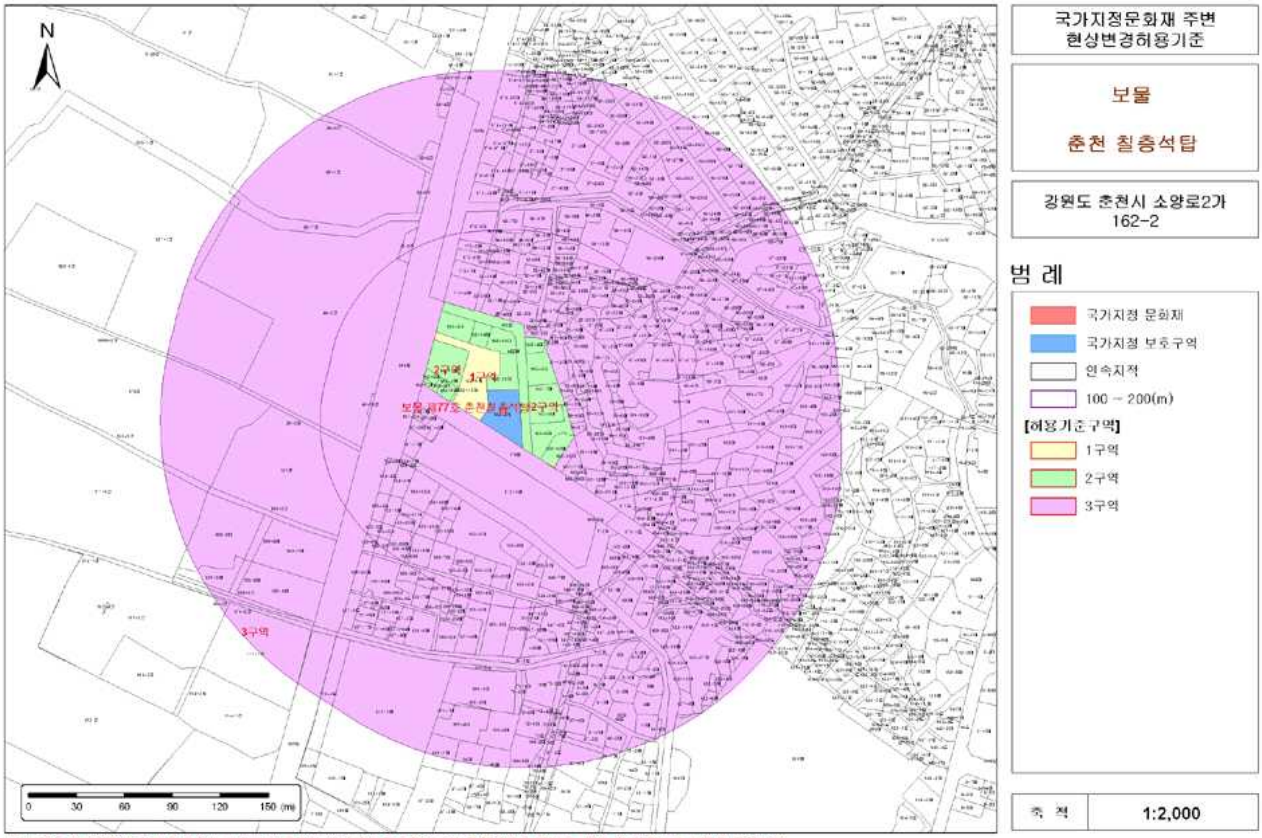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제3구역	○ 위봉문(유형문화재 제1호)·조양루(유형문화재 제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춘천 봉의산성(기념물 제26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2구역	○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제3구역	○ 위봉문(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호)·조양루(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춘천 봉의산성(강원도 기념물 제26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보물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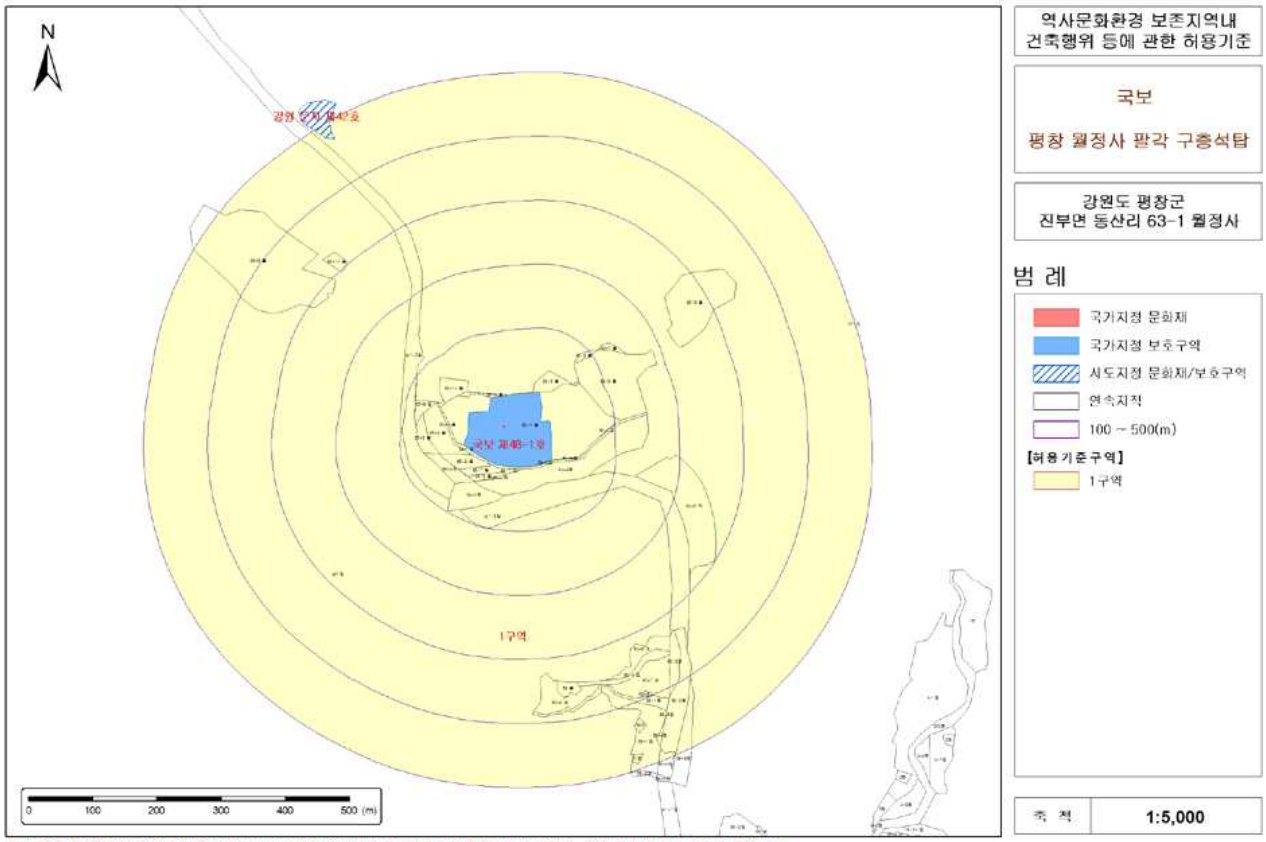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홍천 괘사리 사사자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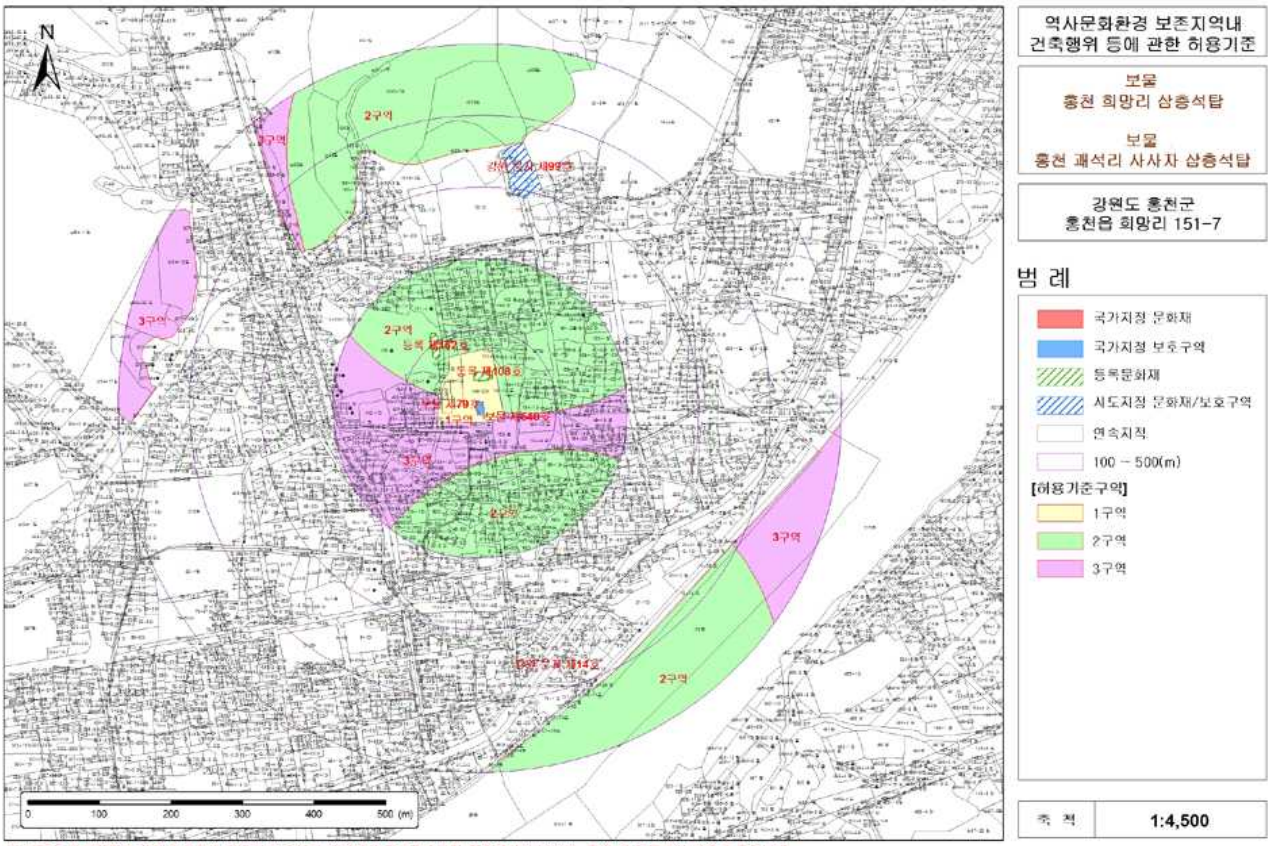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4호 홍천진리석불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99호 홍천향교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4호 홍천진리석불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99호 홍천향교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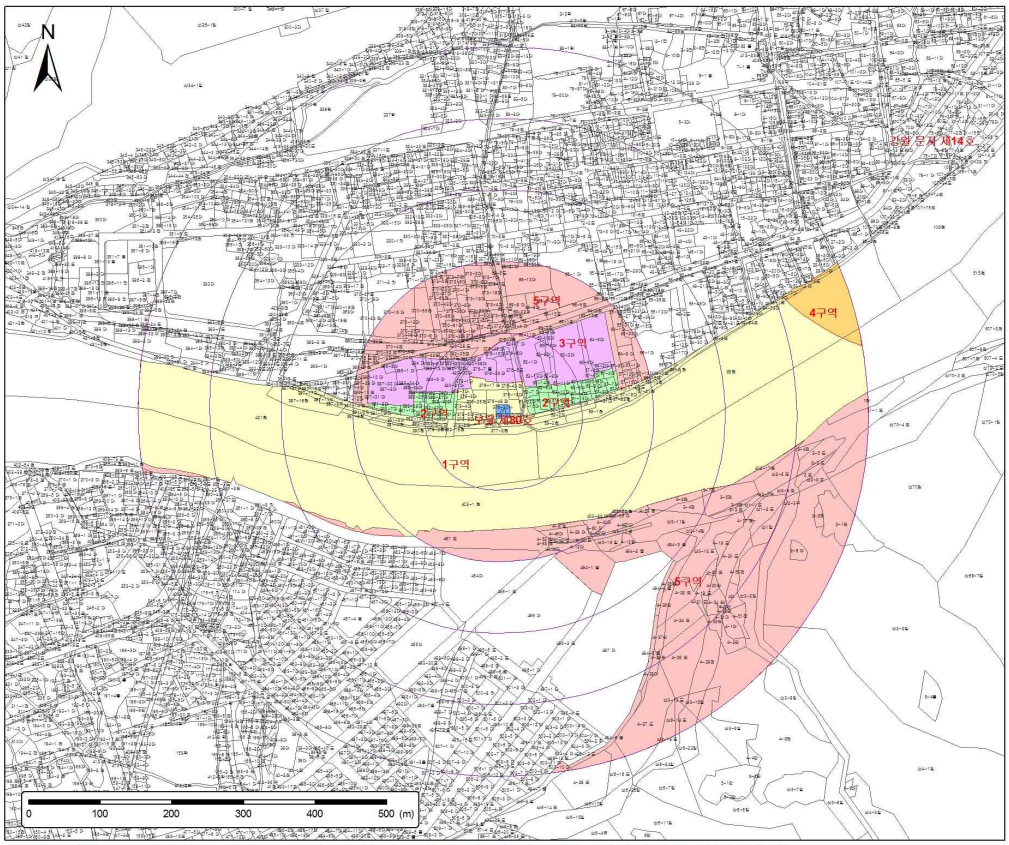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80호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76-26

범 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축 척	1:4,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제4구역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4호 홍천진리석불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제4구역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4호 홍천진리석불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 개별 검토함.(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홍천 물걸리 석조대좌”, “홍천 물걸리 석조대좌 및 광배”, “홍천 물걸리 삼층석탑”,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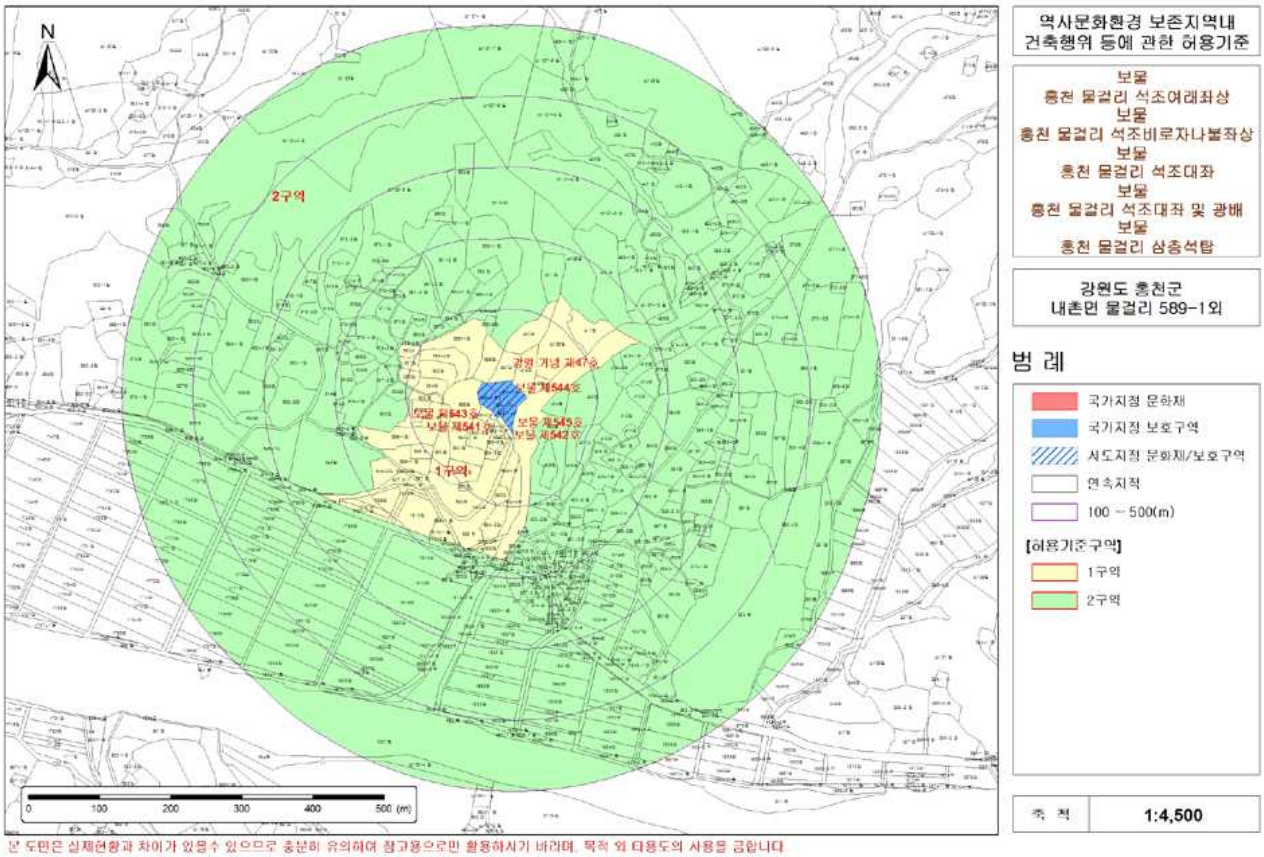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3-12-011

11.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2018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18. 11. 15.) : 보류

- 추가자료 검토 후 재심의

※ 2018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18. 12. 20.) : 보류

- 관계전문가 추가 조사 후 재검토

※ 2019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19. 4. 18.) : 부결

- 지정가치 미흡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충청남도지사

(2) 대상문화재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문수사극락보전」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문수골길 201

○ 지 정 일 : 1973. 12. 26.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瑞山 文殊寺 極樂寶殿)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문수골길 201
○ 조성연대 : 조선시대(17세기)
○ 지정면적 : 170.2㎡(보호구역 1,849.8㎡)
○ 수　　량 : 1동
○ 구조/형식 : 다포계 / 단층 맞배지붕

안건번호 건축 2023-12-012

12. 나주 서성문 안 석등 지정명칭 변경 검토

가. 제안사항

「나주 서성문 안 석등」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신청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보물 「나주 서성문 안 석등(羅州 西城門 안 石燈)」의 한자 표기와 관련한 금성읍지(1897년), 지방지도 나주지도(1872), 나주군읍지(1899)에서 확인되는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함.

-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2023. 6.)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나주 서성문 안 석등(羅州 西城門 안 石燈)

○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고분로 747 (반남면, 국립나주박물관)

○ 지 정 일 : 1963. 01. 21. / 보물지정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현행 명칭	변경 명칭(안)
나주 서성문 안 석등 (羅州 西城門 안 石燈)	나주 서<u>성</u>문 안 석등 (羅州 西<u>成</u>門 안 石燈)

○ 변경사유 : ‘나주 서성문 안 석등’의 한글 명칭은 이미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행을 유지하되, ‘서성문’의 한자어 표기는 1800년대 고증 문헌들에서 확인되는 ‘西成門’으로 조정하고자 함.

- 고증 문헌 속 서성문 관련 주요내용

연번	고증 문헌(년도)	서성문 관련 주요내용
1	나주목읍지 나주목여지승람(1816)	서문에만 '영금문(暎錦門)' 편액이 있음
2	호남읍지 나주목여지승람(1871) *지도	西城門
3	지방지도 나주지도(1872)	西成門
4	금성읍지(1897)	
5	나주군읍지(1899)	

※ 문화재 명칭변경 이력

년도	명칭	비고
1963.01.21.	보물 「나주 서문 석등 (羅州 西門 石燈)」	문교부 고시 제173호
2010.12.27.	보물 「나주 서성문 안 석등 (羅州 西城門 안 石燈)」	문화재청 고시 제2010-133호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3-12-013

13.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종교시설(사명대사 교육관 및 체험관) 건립 소위원회 결과보고

가. 보고사항

대구 동구 소재 보물「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에 종교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23.10.27.)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216호, 2020. 1. 30) 제6조(소위원회 운영) 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한 행정처분사항은 해당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함.

※ ‘23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10.19.) : 조건부가결

-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대구 동화사 대웅전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201길 41 (도학동)

○ 지 정 일 : 2008. 04. 28.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산124-1 외 1필지

- 문화유산과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60m(제1구역)

○ 사업내용 : 종교시설(사명대사 교육관 및 체험관) 건립

1) 대지면적 : 4,982.00㎡

2) 건축면적/연면적 : 627.72㎡ / 2,761.31㎡

3) 건폐율/용적률 : 12.48% / 16.65%

4) 용도 : 종교시설

- 지상 1층, 2층 : 기획전시실 / 지하 1층 : 휴게공간, 영상관 기계실 등

5)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최고높이 14.35m

6)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7) 마감

- 외벽 : 노출콘크리트 문양찍기, 전통무늬창호(로이복층유리), 점토벽돌
- 지붕 : 한식기와잇기(동와)

라. 소위원회 결과 : 조건부가결

○ 신청계획안은 동화사 종합정비계획에 승인된 규모보다 작게 되어 적절하나, 아래사항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상층은 2층으로 계획되어 배산을 가릴 우려가 크므로 2층 면적은 축소가 필요함
- 동화문에서 진입할 경우 지하층의 전면이 크게 보여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저수지와 최대한 이격 또는 축소하면서 지반레벨을 조정토록 함
- 동화문 진입부과 염불암 진입부 경사면을 차폐식재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 2023-12-014

1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토사유출방지 사면보수 등 허가신청 21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21건	원안가결 16건 조건부가결 5건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경북 영주 (○○○)	□ 토사유출방지 사면보수 ○ 위치 :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257 * 제1구역, 세계유산 완충구역 (보호구역에서 약 310m) - 개별검토 ○ 내용 : 토사유출방지망 및 조경석 설치 - 사업면적 : A=275.0㎡ - 사업규모 : L=55.0m, B=5.0m - 사업기간 : '23. 10. ~ 12. - 사업예산 : 23,200천원	원안가결	'23.11.27
보물 제주향교 대성전	제주 제주 (○○○)	□ 조명시설 정비(태양광) ○ 위치 : 제주시 서문로 용담1동 311번지 * 보호구역(문화재로부터 50m 이격)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보안등 교체 - 기존 설치된 보안등 5개 교체 - 높이 : 4m	원안가결	'23.11.27

<table>
<tr><th>문화재명</th><th>소재지
(신청인)</th><th>사업내용</th><th>처리결과</th><th>처리일자</th></tr>
<tr><td>보물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td><td>경북 문경
(○○○)</td><td>□ 근린생활시설(1종) 신축(변경허가)
○ 위치 :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83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64m 이격)

※ '22년 1월 1차 자체검토회의 (2022.01.12.)
: 부결(역사문화경관 저해)
※ '22년 4월 1차 자체검토회의 (2022.04.11.)
: 보류(현지조사 후 재검토)

현지조사 의견('22. 4. 19. ○○○)
▸신청부지는 보호구역에서 약 200m 이격되었고, 신청지와 탑 사이에는 낮은 둔턱이 있으며, 과수나무가 자라고 있는 상황임
▸신청 건물이 신축될 경우 지붕 일부가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폐사지 추정지역임을 감안하여 시발굴조사의 선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배치는 조정하여 지형 훼손을 주지 않도록 함이 좋겠음

※ '22년 5월 1차 자체검토회의 (2022.05.10.)
: 조건부가결(건물 배치조정, 시·발굴조사 선행)
※ 경미한 허가변경 (문경시, 2022.12.19.)
: 원안가결(기간연장, ~23.12.31.)

○ 내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창고)
신축 1동
- 대지면적 : 1,134㎡
- 건축(연)면적 : 98.88㎡
- 층수/높이 : 1층/6.9m
- 구조 : RC조(패널 위 기와패널)

<table>
<tr><th>구분</th><th>기존
('22년5월1차)</th><th>금회
('23년11월2차)</th></tr>
<tr><td>위치</td><td colspan="2">남동쪽으로 1.3m 이동</td></tr>
<tr><td>석축</td><td>없음</td><td>L=30m,
H=0.5~1.6m</td></tr>
<tr><td>토목</td><td colspan="2">콘크리트 포장 일부 추가</td></tr>
<tr><td>마감</td><td>노출콘크리트,
적벽돌</td><td>적벽돌</td></tr>
<tr><td>지붕</td><td>기와판넬</td><td>기와판넬, 고정창 신설</td></tr>
<tr><td>기타</td><td colspan="2">변경없음</td></tr>
</table>
</td><td>원안가결</td><td>'23.11.27</td></tr>
</table>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안성향교 대성전	경기 안성 (○○○)	□ 소매점 및 도로부지 조성 ○ 위치 : 안성시 당왕동 83-11번지 외 2필지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450m 이격) ○ 내용 : 소매점 및 도로부지조성 - 건축물 : 13개동 ・단층, 70㎡, 경량철골조, 최고높이 6m - 구조물 ・L형 옹벽: 높이 4.5m이하, 296m ・역T형 옹벽: 높이 4.5m이하, 57m ・보강토 옹벽: 높이 4.8m이하, 495m - 사업기간: 2022.4.~2024.4. *기존 허가내용 ○허가내용 : 소매점 및 도로부지조성 ○허가기간 : 2022.3.8.~2023.3.7. ○허가조건 : 원안가결(기 제출된 설계도서대로 시행토록 함)	원안가결	'23.11.27
보물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 반가상	경기 이천 (○○○)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학원) 부지 조성 및 건물신축 ○ 위치 :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208-4번지 외 2필지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429m 이격) ○ 내용 - 사업면적 : 2,728㎡ - 건축면적 : 503.6㎡ - 연 면 적 : 1,478.22㎡ - 건축높이 : 14.70m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성 토 량 : 2,703.41㎥ - 사업기간 : 2023.11.~2025.11. *기존 허가내용 ○허가내용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학원) 부지 조성 및 건물신축 ○허가기간 : 2022.7.12.~2023.7.11. ○허가조건 : 원안가결(기 제출된 설계도서대로 시행토록 함)	원안가결	'23.11.27

<table>
<tr><th>문화재명</th><th>소재지
(신청인)</th><th>사업내용</th><th>처리결과</th><th>처리일자</th></tr>
<tr><td>보물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td><td>경북 경산
(○○○)</td><td>□ 팔공산 소원길 생태탐방로 조성(변경허가)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42 외 3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4m 이격)
- 개별검토
※ '19년 11월 자체검토회의 (2019.11.12.)
: 원안가결
※ '23년 11월 자체검토회의 (2023.11.06.)
: 원안가결
○ 내용 : 팔공산 갓바위 생태탐방로 조성
- 안내판 : 7개소(W=0.7m~3m, H=1.4m~1.8m)
- 난간 : 로프난간 73경간(W=1.5m, H=1.2m)
- 계단 : 목재계단 7단(W=1.2m)
- 데크 4개소(W=1.5m,L=103m)
- 부대공 : 토사밀림 방지대(3단, 각재형, 43경간)
<table><tr><th></th><th>기존(11월1차)</th><th>금회(11월2차)</th></tr><tr><td>안내판</td><td>8개소
(종합안내판 2개소)</td><td>7개소
(종합안내판 1개소)</td></tr><tr><td>데크</td><td>2개소
(W=1.5m, L=66m,)</td><td>4개소
(W=1.5m, L=103m,)</td></tr><tr><td>돌계단</td><td>1개소(27단)</td><td>-</td></tr><tr><td>기타</td><td colspan="2">변경없음</td></tr></table></td><td>원안가결</td><td>'23.11.27</td></tr>
<tr><td>보물
부산 운수사
대웅전</td><td>부산 사상
(○○○)</td><td>□ 임도구조개량사업
○ 위치 : 사상구 모라동 산110-1번지 일원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300m 이상 이격)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비탈문 흙막이 시설 설치 및 노면 포장
- 큰돌 메쌓기 : H=1.5m / 수량 425BT
- 자갈포설, 콘크리트포장, 파형강관
- 사업기간 : 2024. 1월 ~ 6월
- 사업비 : 150백만원(시비)</td><td>원안가결</td><td>'23.11.27</td></tr>
</table>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전남 구례 (○○○)	□ 천은사 진입 교량 정비 ○ 위치 :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63-8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0m 이격) ○ 내용 : 노후 한 교량 철거 후 신축 - 규모 : 길이 16m, 폭 8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마감 : 화강석 돌붙임, 석재난간, 황토 콘크리트 포장 * 공사 중 임시가도 설치(길이 22m, 폭 4m, 콘크리트포장) - 소요예산 : 7억원 - 사업기간 : 2024.3.~2024.7.	원안가결	'23.11.27
국보 충주 고구려비	충북 충주 (○○○)	□ 일반산업단지 조성 ○ 위치 :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 용전리 일원 * 제3구역(문화재로부터 385m 이상 이격) - 개별심의(3m절·성토, 도로개설) ○ 사업내용 : 일반산업단지 조성 - 개방방식 : 민·관합동개발(충주시, 현대산업개발, 교보증권 등) - 개발목적 : 신산업 기술을 육성하여 대단지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 면 적 : 1,698,492㎡ - 사업기간 : 2021. 09. ~ 2026. 12.	원안가결	'23.11.27
국보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 입상	충남 태안 (○○○)	□ 백화산 등산로(청조루~태을암) 정비 ○ 위치 :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산5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230m 이격) - 개별검토 ○ 내용 : 등산로 정비 - 목교설치 : A=27㎡(L=18m, B=1.5m) - 목재데크 : A=33㎡(L=22m, B=1.5m) - 사업기간 : '23. 12. ~ '24. 12. - 사업예산 : 181백만원	원안가결	'23.12.11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경북 성주 (○○○)	□ 백운동 야영장 리모델링 정비 ○ 위치 : 성주시 수륜면 백운리 1833-1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280m 이격) - 개별검토 ○ 내용 : 야영장 관리동 신축 및 주변정비 - 대지면적 : 1,192㎡ - 관리동 신축 : 148㎡ - 수경시설, 데크계단, 자연석쌓기 등	원안가결	'23.12.11
보물 창녕 석빙고	경남 창녕 (○○○)	□ 전주 신설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93, 286-1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30m 이상 이격)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전주 설치 - 한전 전주 2개 설치 - 전주 16m 2개 - 2.55m 굴착	원안가결	'23.11.27
보물 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전북 고창 (○○○)	□ 이동통신공용기지국 및 전송로 설치 ○ 위치 :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 90번지 * (보물)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보물)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93.8m 이격) * (보물)고창 선운사 대웅전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02.1m 이격) ○ 내용 : 고창 선운산 일원 등산로 통화음영 지역 이동통신서비스 개선 - 환경친화형(소나무형) 이동통신중계기(높이 20m) 2기 설치 - 전송로 55m 설치 (전기+광 36m, 전기 9m, 광 10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원안가결	'23.12.11

<table>
<tr><th>문화재명</th><th>소재지
(신청인)</th><th>사업내용</th><th>처리결과</th><th>처리일자</th></tr>
<tr><td>보물
영광 불갑사
대웅전</td><td>전남 영광
(○○○)</td><td>□ 불갑사 진입로 경관조명 설치
○ 위치 :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12번지 7호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00m 이격)
○ 내용 : 상사화 축제가 열리는 불갑사 진입로에 상사화 주제 로고라이트 조명 설치
- 길이 : 38m
- 면적 : 38㎡
- 스테인리스 가로등 : 3주(높이 4.2m)
- LED 조명(로고라이트) : 12개
- 사업기간 : 2023.11.~2023.12.</td><td>원안가결</td><td>‘23.12.11</td></tr>
<tr><td>보물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td><td>경북 울진
(○○○)</td><td>□ 단독주택 신축(변경허가)
○ 위치 :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1267-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220m 이격)
- 개별검토
※ 2021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2021.6.17.) : 보류(기존건물 무허가여부 확인)
※ 2021년 제7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2021.7.15.) : 원안가결
○ 내용 : 단독주택신축(변경허가)
<table>
<tr><th>구분</th><th>기존
(21년7월)</th><th>금회
(23년12월)</th><th>비고</th></tr>
<tr><td>대지
면적</td><td>305㎡</td><td>305㎡</td><td>-</td></tr>
<tr><td>건축면적</td><td>60㎡</td><td>85㎡</td><td>25㎡ 증</td></tr>
<tr><td>최고
높이</td><td>5.2m</td><td>5.5m</td><td>0.3m 증</td></tr>
<tr><td>지붕
마감</td><td>샌드위치판넬</td><td>칼라징크</td><td></td></tr>
<tr><td>외부
마감</td><td>벽체용
사이드판넬</td><td>황토벽돌
쌓기</td><td></td></tr>
<tr><td>기타</td><td colspan="3">변경없음</td></tr>
</table></td><td>원안가결</td><td>‘23.12.11</td></tr>
</table>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국보 충주 고구려비	충북 충주 (○○○)	□ 농업용수 관로 공사 ○ 위치 :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 용전리 일원 * 제3구역(문화재로부터 385m 이상 이격) - 개별심의(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사업내용 : 농업용수 관로 공사 - 개방방식 : 민·관합동개발(충주시, 현대산업개발, 교보증권 등) - 사업목적 : 일반산업단지 농업용수 대체 이설 관로공사 - 면 적 * 터파기 : 1,403.26㎡ * 관로 신설 : 직경 800mm, 412.72㎡ - 사업기간 : 2024. 01. ~ 2025. 03.	원안가결	'23.12.11
보물 부산 운수사 대웅전	부산 사상 (○○○)	□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 ○ 위치 : 부산 사상구 모라동 1241번지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126m 이상 이격)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시설 - 석축공사 * 바닥막이 : H0.5*W1.5, 6개소 * 큰돌 기슭막이 : H2.0, 90.9개소 - 구조물공사 * 퍼걸러 설치 : 3.0×3.0, 1개소 - 부대공사 : 목재울타리 H1.2*W1.5 - 사면보호공 : 초류종자파종 586㎡	조건부가결 (관계전문가 자문받아 시행)	'23.11.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강원 양양 (○○○)	□ 요사채 철거 및 승방 복원 ○ 위치 : 양양군 강현문 둔전리 산1번지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54m 이격) - 시도기념물 지정구역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요사채 철거, 승방 복원 - 요사채 : 137.35㎡ - 승방복원 : 154.44㎡ * 정면 7칸, 측면 2칸 * 팔작지붕(한식기와)	조건부가결 (도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	'23.11.27
국보 여수 진남관	전남 여수 (○○○)	□ 여수 진남관 현판 탁본 ○ 위치 : 여수시 군자동 472번지 * 당해문화재 ○ 내용 : 여수 진남관 현판 탁본 - 목적 : 여수시립박물관 전시 유물로 확보 - 탁본대상 : 진남관 편액 등 6점 - 탁본수량 : 7벌(편액 2벌, 그 외 각 1벌씩) · 진남관 편액(327×126, 양각) : 2벌 · 중건상량문(240×64, 음각) : 1벌 · 중수기(170×36, 음각) : 1벌 · 중건지(90×56, 음각) : 1벌 · 중수감동록(65×38, 음각) : 1벌 · 중건인명록(64×37, 음각) : 1벌 - 탁본방법 : 습식 - 탁본수행 : 토문 한승찬 - 사업기간 : 11월 중(착수일로부터 7일)	조건부가결 (현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탁본하되, 탁본 전후 사진을 제출토록 함.)	'23.12.07
보물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경북 영주 (○○○)	□ 임시 가설컨테이너(농막) 설치 ○ 위치 :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68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60m 이격) - 개별검토 ○ 내용 : 가설컨테이너(농막) 설치 - 목적 : 농기구, 농자재 등 보관 - L6.5m×W3m×H3.3m	조건부가결 (존치기간 3년 재심의)	'23.12.11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경북 칠곡 (ㅇㅇㅇ)	□ 임시 가설컨테이너(농막) 설치 ㅇ 위치 :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26-3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190m 이격) - 개별검토 ㅇ 내용 : 가설컨테이너(농막) 설치 - 목적 : 농기구, 농자재 등 보관 - L6.0m×W3m×H2.5m	조건부가결 (존치기간 3년 재심의)	'23.12.11